

복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2000. 12.

韓道淑

序 言

우리나라는 열악한 자연환경 가운데에서도 우수한 인력자원의 활용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시각에서 인력자원의 활용 및 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계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생산활동 외에도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출산과 육아 기능을 이중으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출산 및 육아기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용주와 개인이 부담하여 직장에서의 여성고용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인 부담의 필요성과 함께 관련 재정 및 조세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비용을 개인과 사회가 분담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어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노동력 보호 및 개발과 함께 다음 세대의 노동력생산을 위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

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보고서는 저조한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에 걸친 장기과제의 외국사례연구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조세 지원방안 연구의 제1단계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북구의 사례연구를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북구국가들의 여성 및 가족과 자녀 지원정책에 대한 최근 자료를 상세히 정리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국의 사례로부터 얻어 낸 시사점과 국내 노동시장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제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될 여성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우리나라의 여성 및 가족과 자녀 관련정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한도숙 박사가 집필을 하였다. 저자는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송은주 연구원과 장정순 연구조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본 보고서의 심사에 참여해 준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12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柳 一 鎬

目 次

I. 서 론	11
II. 최근 북구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15
1. 덴마크	15
2. 핀란드	18
3. 노르웨이	22
4. 스웨덴	24
III. 북구 각국의 여성 및 가정과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27
1. 덴마크	27
2. 노르웨이	41
3. 스웨덴	53
4. 핀란드	69
IV. 북구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의 국제비교	79
1. 가족과 자녀에 대한 현금급여	84
2. 자녀 양육에 대한 현금급여	88
3. 자녀수당	90
4. 생활유지를 위한 자녀양육비의 선지급제도	91
5. 기타 지원제도	94
6. 가정과 자녀에 대한 서비스	94
7. 현금급여와 가족과 자녀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및 재원조달	100
8. 인구와 소득분배	104

V. 북구 각국의 사회보장지출 및 관련 조세제도	107
1. 사회급여에 대한 과세	107
2. 사회보장지출	110
VI. 결론 및 시사점	122
참고자료	127

表 目 次

<표 I-1>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11
<표 I-2>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국제비교 (1998년)	12
<표 III-1> 덴마크의 결혼율 관련 주요통계	30
<표 III-2> 덴마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사회정책	31
<표 III-3> 노르웨이의 출산율 추이	41
<표 III-4> 노르웨이의 어린 자녀를 위한 현금수당혜택 (1997년 기준)	42
<표 III-5> 노르웨이의 자녀양육비 지급자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43
<표 III-6> 노르웨이의 출산관련 부모급여(parental benefit) 와 일괄보조금(1977~2000년)	47
<표 III-7> 노르웨이의 자녀 수에 대한 연간 일반가족수당	49
<표 III-8> 노르웨이 정부가 제시하는 자녀양육비 최소기준 (ordinary family allowances): 1946~2000년	52
<표 III-9> 스웨덴의 사회보험 지출(1996~1998년)	53
<표 III-10> 자녀 출산을 위한 부모 현금급여(1997년)	55
<표 III-11> 자녀 양육을 위한 일시적 현금급여(1997년)	57
<표 III-12> 아버지의 날(1997년)	58
<표 III-13> 임신부 현금급여(1997년)	59
<표 III-14> 스웨덴의 자녀수당	61
<표 III-15> 고아연금(1997년)	62
<표 III-16> 생계보조금을 받는 아동의 수(1997년 12월)	63

<표 III-17> 생계보조금(1997년)	64
<표 III-18> 생계유지를 위한 양육비 지불에 대한 채무가 있는 부모(1997년 12월 기준)	65
<표 III-19> 주택급여 혜택	66
<표 III-20> 주택급여(1997년 12월)	67
<표 III-21> 간호수당(1997년)	68
<표 III-22> 핀란드의 가정과 자녀	69
<표 IV-1> 총사회지출 중 가족과 자녀에 대한 지출비중	81
<표 IV-2> 가족구성에 따른 가정의 분류(1997년)	82
<표 IV-3> 독신, 부부, 동거자의 가처분소득과 20~44세의 PPP-Euro에 의한 가처분소득	83
<표 IV-4> 출산관련 소득대체 현금급여(1997년 12월)	85
<표 IV-5> 출산에 대한 현금급여 현황(1997년 12월)	86
<표 IV-6> 임신, 출산, 입양에 따른 현금급여 수혜자 (1990~1997년)	87
<표 IV-7> 자녀수당 연간금액(1997년 12월)	92
<표 IV-8> 선급생활유지수당 규모(1997년)	93
<표 IV-9> 18세 미만 인구 중 선급생활유지수당 수취 자녀의 비율(1990~1997년)	94
<표 IV-10> 일반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등록된 자녀의 수(1990~1997년)	98
<표 IV-11> 탁아시설과 보육기관에 등록된 자녀의 연령별 비중(1990~1997년)	99
<표 IV-12> 현금급여와 가족 및 자녀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및 재원조달(1997년)	102
<표 IV-13> 가족 및 자녀를 위한 현금급여 및 서비스, PPP/1인당(1997년)	103
<표 IV-14> 성별·연령별 평균 인구(1997년)	105
<표 V-1> 과세/비과세 현금급여의 GDP비중 (1995~1997년)	107

<표 V-2>	현금급여에 대한 세제	108
<표 V-3>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에서 사회지출의 GDP비중(1996년)	110
<표 V-4>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1인당 사회지출(1996년, PPP-Euro환산치)	111
<표 V-5>	사회보장 총액 및 1인당 지출액(1990~1997년) ...	112
<표 V-6>	사회보장지출과 GDP의 관계(1990~1997년) ..	113
<표 V-7>	1인당 사회보장지출(1990~1997년, 1997년 기준으로 PPP-Euro로 환산)	114
<표 V-8>	중앙정부, 지방정부, 고용주, 가입자별 사회보장지출 재원의 비중(1990~1997년)	115
<표 V-9>	연금을 위한 기금(1990~1997년), 1997년 기준 ..	117
<표 V-10>	주요그룹별 사회보장지출비중(1995~1997년) ...	119
<표 V-11>	유형별, 목적별 사회보장지출(1997년)	120
<표 V-12>	유형별, 목적별 사회보장지출 비중(1997년)	121

I. 서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이 큰 몫을 담당하였으며 새로운 경제발전의 도약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인적자원의 활용 및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활용 상태의 우수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학력, 즉 대학졸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1998년 기준 54%)이 중등교육 이하의 여성(6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지식기반 전환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으며 출산율(<표 I-1>참조)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향후 노동인력 구조의 변화는 효율적인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I-1>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단위 : 여자 1만명당)

연 도	1970	1980	1990	1997	1998
합계 출산율	4.5	2.8	1.6	1.6	1.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99.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OECD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가임 및 어린 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25~39세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2>참조). 이러한 연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출산 및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여성관련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고 사료된다.

<표 I-2>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국제비교(1998년)

(단위 : %)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한 국	61.0	51.8	47.2	58.4	63.3	61.5	55.0
미 국	73.0	77.3	75.4	75.6	78.6	78.8	73.0
프랑스	70.0	80.8	82.9	83.6	85.5	86.1	79.1
독 일	67.0	74.2	74.9	76.0	78.7	77.2	69.1
일 본	73.4	69.2	55.8	62.2	70.2	72.4	67.8

자료 : ILO,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8.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재정 및 조세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연구기간은 2년으로 첫 해에는 외국제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사례연구로부터의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제2년도에는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고용구조와 실업에 대한 현황과약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초분석과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토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장기과제의 첫 단계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한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와 함께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와 향후 노동인력의 감소 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북구의 경우는 대단히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함께 높은 출산율이 동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성과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리하고 과연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구 국가들은 제도적인 복지국가로서 사회보험제도의 발달과 남녀간의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을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와 경제력이 세계의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구 여성들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성들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근로자, 가족의 소득을 책임지는 부양자,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다양한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게 된다.

북구 국가들의 경우 70%를 상회하는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함께 2%에 육박하는 높은 출산율과 높은 1인당 GNP 또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서구 유럽국들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높은 출산율은 정부의 출산율 증가와 남녀 평등정책 그리고 가족을 사회적인 하나의 단위로 보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 및 자녀 각 개인을 위주로 하는 사회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북구 국가들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정책은 자녀가 성장기 동안 안정된 경제환경과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함에 있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혜택에는 출산 및 입양과 관련한 다양한 급여혜택과 신축적인 유급 육아휴직제도 및 자녀수당과 어린 자녀를 위한 탁아 및 보육시설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북구 국가들의 관련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가족 및 자녀에게 제공되는 지원정책의 폭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는 노동과 연관된 사회급여의 비중이 큰 반면 여성에게는 가족 및 자녀와 관련된 지원의 비중이 크고 가족의 구성유형에 따라 특정 사회급여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북구에서의 여성 및 자녀와 관련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다른 OECD국들에 비해 신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구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자녀수당 및 자녀의 생계유지를 위한 선지급 생활유지수당이 모든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직장여성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각종 서비스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최근 북구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북구 각국의 관련정책을 자세히 정리하고 제IV장에서는 북구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국제비교하여 논의하고 제V장에서는 북구 각국의 사회보장지출과 관련 조세제도 측면에서의 가족 및 자녀관련 비중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VI장에서는 북구의 여성관련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결론을 제시한다.

II. 최근 북구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1. 덴마크

1994년 이후 덴마크 경제는 1994년에서 1998년 기간중에 연평균 GDP 증가율이 3.6%를 유지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기라 할 수 있다. 실업률도 1993년 10.1%에서 1998년에 5.5%로 떨어졌다. 이러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1997년 이후 총공공경제는 흑자를 이루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개선은 높은 임금이 없이도 실업률을 더욱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생산과 고용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수요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1998년에 덴마크 경제에 있어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발생시켰다. 노동시장에서 수용능력 압력이 증가하였고 임금도 상승했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덴마크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공공 및 민간부문 수요가 성장곡선을 나타내고 저축성향을 올리기 위해 강화되었다. 개인소득의 1%를 누적하는 새로운 연금제도(APT: Danish Labour Market Supplementary Pension Scheme)가 도입되었고 고용가능성(job availability) 증가의 관점에서 세제와 노동시장 분야에서 구조적인 개선은 계속되었다.

1994년 이후 노동시장 개혁은 계속되었는데, 이것의 세 번째 단계인 실업수당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가 1995년에 시행에 들어갔고 이는 1년간의 실업 이후에 시행되는 방향으로 되었다. 실업급여의 총기간은 5년에서 4년으로 감소하였고 모든 젊은 실업수당 수혜자는 6개월의 실업기간 이후 권리와 의무가 시작된다. 그러한 조기적용(early activation)은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젊은 사람들만 해당

된다.

현금보조금(assistance) 수혜자의 경우 시행계획(activation scheme)은 1998년 7월 1일부터 확대되었다. 따라서 실업이 아닌 사회문제(social problem)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현금보조금 수혜자는 시행 대상이 된다. 3개월 이후 좀 더 빨리 시행되는(fast activation) 자의 연령제한이 25세에서 30세로 증가하였다.

1999년에 노동시장으로부터 보다 서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퇴직함으로써 고용가능성(job availability)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제도(withdrawal system)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자발적 조기퇴직급여(benefit)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이는 60세 이후 조기퇴직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재정적으로 더 좋게 하여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발적 조기퇴직급여 또는 노령연금으로의 전환을 미루도록 한다.

자발적조기퇴직제도의 개정은 연금누적액의 현재가치가 조기퇴직수당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조기퇴직으로 인한 상쇄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기퇴직으로의 전환을 미룰 수 있다. 만일 62세까지 자발적 조기퇴직을 연기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엄격한 상쇄(setting-off)는 회피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발적 퇴직급여는 실업급여의 91%에서 100%로 증가될 것이다. 만일 근로자가 자발적 조기퇴직급여의 자격이 주어진 후 2년 이상 일한 사람이라면 세제상 혜택(tax premium)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 자발적 조기퇴직납입제도가 도입될 것이고 자발적 조기퇴직급여에 대한 자격요건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노령연금의 적격연령은 1999년 7월 1일자로 60세가 되는 자들부터 67세에서 65세로 낮아지고 이는 2004년부터 유효하다. 연금가능 연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실제 퇴직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일을 하는 노령연금 수령자들에게 더 이로운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하고 얻은 소득이 노인연금을 상쇄하는 부분이 적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노동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을 위한 보다 신축적인 노동시장을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고용가능성(job availability)은 계속 증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1998년부터 협조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를 설립해야 하는데, 이 위원회는 노동시장 활동을 좀 더 예방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1999년부터는 예방적인 재활활동을 강화하였는데 특히 회사와 관련된 재활활동이었다. 또한 보다 신축적인 직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 예를 들면, 업무능력이 영구적으로 감소된 사람들을 위한 임금이 보조되는 직업(pay-subsidised job)이 있다. 그러므로 병가급여(sickness benefit)를 얻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돌아가서 활동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지원을 증가시키고자, 52주 이후에 병가급여(sickness benefits)로 지출하는 정부보조금(co-financing)이 1999년부터 중단될 것이다. 새로운 연금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의 지출에 대한 정부상환(reimbursement)이 50%에서 35%로 감소되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람들이 수동적인 보조금(allowance)을 선호하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제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자녀들에게 있어 아버지의 자녀양육혜택(paternal benefit)에 대한 자격은 1998년도에 2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공공 자녀보호시설(public day care institution)을 선호하는 부모가 민간탁아(private child care)를 선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탁아지원제도(child care)가 1998년에 도입되었다. 1999년부터 자녀들을 위한 부분적으로 무료인 탁아시설(day care institution)에 대한 비용은 소득제한액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데서 오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다.

노령자 수의 증가와 비용을 고려한 주택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임

대료보조 채택의 관점을 갖고, 점진적인 주택의 구조변경급여(benefit) 계획이 1999년부터 적용되었다. 이 계획에 의해 임대보조금 수취자의 임대료 지급 부분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수취인이 임대료가 증액된 부분을 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보조금(rent subsidies)이 지급되는 최고소득 한도가 줄어들어 따라 기금의 상당부분을 저소득가구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말부터 약(medicine)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체제가 도입되었고 보조금액은 환자들의 상환가능한 약의 소비량에 따라 결정되었다. 연간 500DKK 이하의 약 소비에 대한 보조금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어 보조금은 점차 연간 2,800DKK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가의 85%로 증가될 것이다. 사용자 부담분은 연간 3,600DKK를 초과할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약의 소비를 절제하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약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약 소비가 많은 몇몇 사람들은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한편, 외래환자(out-patient treatment)를 포함한 병원부문에서의 활동이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진료와 치료(examination and treatment)를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줄어들어 기여하였다. 1999년중에는 암이나 심장 질환과 같은 질병의 진료 전(pre-examination), 치료(treatment), 치료 후(post-treatment)를 위해 최대 대기시간 형태의 치료보장(treatment guarantee)제도가 도입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보건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질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대기기간을 보장하는 의료프로그램(health plan)을 제시하였다.

2. 핀란드

최근에 핀란드의 국내총생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연간 4~6%) 계속적으로 연평균 3%의 성장이 기대되었다. 빠른 경제성장은 직장의 수를 증가시켰고 실업률은 1994년에 16.4%에서 1998년에는

11.4%로 감소하였다. 1998년에 공공경제가 흑자를 냄으로써 이러한 경제발전이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부문에도 명백히 반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주정부(state)의 경제는 아직도 적자상태이고 경기 하강기에 발생한 거대한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5~1996년에 합의된 사회보장과 관련한 개정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었고 개혁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부분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측에 따르면, GDP에서의 사회적 비용의 지출 비율은 2000년에 27%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장기실업이다. 정부는 실업 개선 수단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의 장기실업자가 근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재취업, 훈련, 사회복지 또는 자발적 조기퇴직을 위한 모든 장기실업자에 주어지는 기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1997년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A National Programme for Ageing Workers(1998~2002))의 주목적은 노동수행능력을 유지하고, 직장에서의 주위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법을 개정함으로써 고령화되어 가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즉 이는 고령 근로자들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핀란드는 연금제도(pension schemes)의 개정을 통해 평균퇴직연령을 증가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근로자는 퇴직시 전액 연금보다 부분연금을 수급하기를 권고받고 있다. 이러한 부분연금 자격을 얻기 위한 연령제한을 처음 58세에서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후 1998년 7월부터 2000년 말까지 부분연금 자격의 연령 제한이 56세 이하로 조정·적용되었다. 그러나 부분연금의 중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 1998년 말 현재 부분연금의 가입자는 약 1만 9백명에 불과하며, 주와 기초자치단체 근로자의 민간부문 일반 퇴직연령

이 63세에서 65세로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1998년 7월 연금지급 결정을 위한 기준이 5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개정되었으며, 단기취업의 경우 비록 소득 수준이 취업 초기보다는 낮아지더라도 미래연금 수취액은 적어지지 않게 되었다.

1996년 이후 기초연금(basic pension)은 고용연금소득이 없는 사람이거나 고용연금이 평균고용연금보다 낮은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고용연금은 일을 함으로써 얻는 주요 생계소득인 반면 기초연금(basic pension)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소득이다. 1997년에는 기초연금과 보족연금(supplementary pension)이 통합되었다. 또한 기초연금에 포함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보족연금 부문은 점차 삭감되어 폐지될 예정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의 단기적인 직업들은 최근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한 달 미만의 고용기간뿐만 아니라 초기최저소득한계(earlier minimum earnings limits)를 초과하지 않는 단기직업들은 고용연금보험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1997년에 실업급여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실업급여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은 26주에서 43주로 확대
- ② 적격기간은 5일에서 7일로 연장
- ③ 실업연금을 받을 때까지 실업급여(benefit)를 받는 자격이 되는 연령은 55세에서 57세로 증가
- ④ 소득과 기타 급여의 조정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여분의 소득이 더욱 증가

또한 훈련보험제도(training insurance scheme)가 1997년 8월에 시작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고령의 근로자(최소 12년의 업무 경험과 1년의 실업상태인)가 장기간의 실업기간중에 훈련에 참가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들은 실업상태로서 훈련기간 동안 매

일 동 액의 현금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이 주어졌다. 이러한 개정이 있기 전에는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공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었다. 이 제도의 적용은 최소 10년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최소 4개월의 실업에 놓인 자들에 한해서 1998년 8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주택보조금(housing subsidy)과 사회보장지원금(social assistance) 간의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자 주택비용 부채부분의 7%는 1998년 3월 1일로써 사회보장지원금에서 공제된다. 동시에 주택급여 수준은 증가되고 자녀를 위한 사회보장지원금의 기초금액은 다소 감소되었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모든 수혜자는 주택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취학연령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1996년 이후 기초자치단체 탁아시설(municipal day care) 사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어린 자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는 1997년 8월 1일에 개정되었다.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기초자치단체탁아시설(municipal day care)과 양육보조금(home care allowance)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는 계속 남아 있다. 또한 민간탁아시설(private day care) 제공자에게 새로운 지원제도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탁아요금(day care fee)의 최고 지급액이 월 FIM 1,000 미만(이전에는 FIM 1,430)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각 가정으로 하여금 가장 적절한 방식의 탁아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과비용을 위한 의료보험(sickness insurance scheme)으로부터의 상황은 1956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모든 인구에 적용되는 비용의 상황을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시도되었으나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1997년 10월에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1955년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는 치과에서 진료(examination)와 구강 예방 치료(preventive oral care) 비용의 75%를 매 세 번째 해에 상환하게 되었으며 이 규정은

1999년 말까지 적용되었다.

3. 노르웨이

1988~1993년 기간중에 심각한 경기후퇴가 있었으나 최근 GDP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1997~1998년 사이에는 약 2%의 성장이 있었으며 특히 1998년중에는 수출도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취업률과 실업률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투자와 가구소비 부문은 다소 하락하였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경기회복이 끝나 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유가격의 인하는 1998년에 적자로 나타난 무역수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상승은 최근 기간동안 취업에 있어서 두드러진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8년에 취업된 사람들의 수는 전년도에 2.9%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약 2.3% 증가하였다. 1992~1998년중에 취업자의 수는 24만명이 증가하였다. 1998년에는 16~74세인 전체 인구의 약 71%가 취업상태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 노르웨이에서 기록된 적이 없는 가장 높은 취업률이었고 국제 수치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취업률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1997~1998년중에 실업률은 0.9%포인트 하락으로 3.2%가 되었다. 1993년에 경제회복이 시작된 이래 실업으로 일별현금급여(daily cash benefits)를 받는 사람의 수도 감소하였으며 과거 2년 동안 사회보조금(social assistance)을 받는 사람의 수도 감소하였다.

개인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지원의 목적은 노르웨이의 복지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한 개인이 가능한 한 스스로를 위해 근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고용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투입되고 영구적인 사회급여 수혜자를 축소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일반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용과 관련된 정부의 방침은 노르웨이 복지 정책의 핵심요소이다.

최근 노르웨이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1998년 8월 1일부터 1세 자녀를 위한 현금급여는 탁아시설(day care facilities)을 시간제로 이용하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게만 지급되도록 개정되었다. 이 제도는 1999년 1월부터 2세까지 포함하도록 조정되었다. 1998년과 1999년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은 월 3,000NOK이었고, 이것은 월 2,263NOK로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현금급여의 수준은 탁아시설의 사용시간에 따라 감소된다.

1인의 생계부양자(single provider)를 위한 급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는데, 이는 어린 자녀를 둔 1인 생계부양자에게 보다는 나은 경제 여건을 제공하고 급여혜택기간 이후의 자립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의 결과로 더 짧은 기간동안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질병으로 인한 결근(absence)은 1994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1997년과 1998년에는 최고 수치를 나타냈던 1998년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주로 장기결근(8주 이상의 결근)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몇 일 이상의 병가를 가진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4월 1일부터 병가에 대한 고용주의 허용기간이 14일에서 16일로 증가되었으며, 1999년 1월 1일부터 질병급여(sickness benefit)를 받는 최소 소득이 사회보장제도 기본금액(Social Security Scheme's basic amount)의 1/2에서 기본금의 1/4로 증가되었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질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저 근로소득 수준이 연 56,700NOK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16일 동안의 병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적절한 연금가입자(invalidity pensioners)의 수가 계속 증가하여 1998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987년과 1989년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66세 인구에서 부적절한 연금가입자(invalidity pensioner)의 비중도 1997년 8.6%에서 1998년에는 9.1%로 증가하였다.

최근, 정부는 공공위원회를 설립하여 예상된 연금자(anticipatory pensioner)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의 증가 추세를 규명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80세 이상의 인구가 급증할 것이다. 노령인구를 위한 계획은 양질의 신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기본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부는 보호시설(care institutions)과 주거시설(residential care)의 증가뿐만 아니라 간호(nursing)와 보호(care)분야에 할당된 기금의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늘어나는 노인의 수에 맞게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 혜택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 의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1999~2000년 기간 동안 치료와 관련된 선택의 폭(option)을 확대하고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권(option)이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주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사용자 중심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예방, 초기지원, 갱생에 초점을 둔다.

4. 스웨덴

스웨덴 경제의 성장은 대규모 국가수요로 인해 계속되고 있으나 수출 증진은 현재 다소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2~3년간 연간 약 3%의 성장이 기대된다. 물가상승은 아직 낮고 이자율은 더 하락하였다. 실업률은 아직 높지만 노동시장 여건은 전년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개선되었다. 실업률 하락은 교육에 투입되는 사람의 급증으로 인해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다.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취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나, 실업률 하락의 목표가 1997~

2001년 기간중에 달성될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공공재정은 1998년 이후 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 총부채는 1997년에 77%에서 2001년에 56%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Municipal)지출은 1990년대 초에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입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2000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지방정부 당국에게 요구된다. 이러한 재정균형에 대한 의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실업의 증가는 연간 약 1만명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복지체계에서의 예산삭감이 있었다. 공공지출 증가의 통제를 목표로 하는 원가한도체제(cost-ceiling system)는 계속 적용될 것이고 스웨덴 정부는 2000, 2001, 2002년의 한도를 확정지었다. 원가 한도(cost ceiling)는 1999~2002년 기간중에 약 570억 SEK(7.5%)이며 이는 정부지출(사회보험 포함)의 증가로 나타났다.

학교, 간호(nursing), 보호(care) 부문을 보강하기 위하여 일반정부가 기초자치단체와 주정부에게 주는 양여금(grants)이 1997~1999년 기간 동안 160억 SEK 증가했다. 이 결과 1996년에 비해 2001년에 총 220억 SEK의 재원이 증가했다. 평균 기초자치단체 세율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주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1997년에 치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의 목적은 보건 분야에 있어서 급여와 서비스의 증가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특별자금이 지방정부에 주어졌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보장된 치료시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9년 합의에 따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또한 주정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조제약에 지출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조제약에 대한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원가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999년중에 사회보험 분야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1999년 1

월 1일 치과치료를 위한 새로운 보험이 도입되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반건강증진 치과치료로써 치아보존 치료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시켰다. 추가로 특별 최고사용자 요금이 도입되었다. 또한 무료 치과치료가 도입되었고 65세 이상인 치과의사(고령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치료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었다. 연금체제와 관련하여 사회보험료 수준에 몇 가지 조정이 있었다. 연금은 약 2% 증가할 것이고 연금가입자에 대한 주택보조금(housing supplement)도 증가할 것이다. 기간기준금액에서 가격기준금액으로 변경될 것이다.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연금분야에 두드러지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들 규정에 대한 개정의 대부분은 2001~2003년 사이에 수행될 것이다.

Ⅲ. 북구 각국의 여성 및 가정과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1. 덴마크

가. 사회특성

덴마크의 인구는 520만 명이며 인구의 연령분포에 있어 다른 서구에 비해 노령층의 비중이 높다. 가족의 구조면에서 가족구성의 평균 수가 2.2명으로 EU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독신부모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생활수준을 구매력 면에서 살펴보면 1인당 17,800PPS(purchasing power standard)로 EU 평균인 15,700PPS보다 높은 편이다.

경제인구의 1/3이 공공부문에 종사하나 공공부문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인구의 5%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구의 81%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등 경제활동 인구(14세~64세 기준)의 비율이 EU(평균 6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77%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37%(EU의 경우는 25%)가 55세~64세이다. 이는 자녀와 노인들에 대한 보호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낳게 하는 요인이다.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60% 이상이 1가구 1주택이며 53% 이상의 가정이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거환경의 86% 이상이 현대적인 시설을 구비한 주택이며 총인구의 85% 이상이 도회지에 거주하고 있다.

나. 덴마크 사회의 변화

덴마크를 비롯한 북구는 사회민주복지국가들로서 국가, 시장, 가정 등 세 가지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조의 관계가 다른 유럽국가들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법, 권리, 혜택과 의무에 대한 규정이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개인 위주의 정책이 여성의 가정에서의 위치와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몇 가지 역사적인 예로 덴마크는 1857년에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상속권을 부여했으며 미혼여성도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1880년 이후 자신의 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갖게 되었으며 1899년부터는 법적으로 모든 자율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1922년부터는 동등한 자녀의 양육권과 상호 생계유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런 반면 1970년까지 부부합산과세가 이루어졌으며 실업수당에 있어서도 미혼여성 가장보다 남자 가장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개인보다는 가족 또는 남성을 위주로 하는 정책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자녀들도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보육시설 및 금전적인 지원정책도 이러한 개인위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녀관련 정책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와 관련된 여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덴마크의 대부분의 법과 규정 등은 개인 즉, 여자, 남자 그리고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정부부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에서 담당하고 있다. 1983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의 증가는 자녀와 함께 하는 가정환경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산아증가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산아증가정책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이 198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이루어진 가족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노동정책이다.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활성화가 가족의 구성, 크기, 가사 노동의 분배 등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3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출산율의 하락은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의 크기를 줄이려는 노력과 젊은 여성들이 장기간의 교육 및 피임으로 인해 출산을 연기한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¹⁾. 1965년 이후 결혼 외의 동거가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들에게도 법적인 결혼을 통한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결혼율이 1970년도에 비해 1980년대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다 1995년에는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혼율의 하락은 1970년대 여성의 노동시장의 진출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젊은이들의 가정에 대한 관점이 1960년대 또는 1970년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이 가정을 하나의 중요한 조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정책이 가족의 구성원과 노동공급의 유형의 결정 등에 미치는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90년대 말에는 “가족에 우호적인 노동시장”이란 개념하에서 보다 가족 중심적이고 유연성 있는 직장환경을 추구하는 가족 관련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정규직 외에도 파트타임 직장의 활성화와 민간기업들의 보다 탄력적인 인사정책의 도입 등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이용시간과 관련해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방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이를 권장하고 있다.

1) Bertelsen, Ole, “The Falling Birth Rate: Illustrated by the relationship of family size to Woman’s Education and Employment,” 1981.

<표 III-1> 덴마크의 결혼율 관련 주요통계

(단위 : 건수, %)

	결혼 건수	결혼율 ¹⁾		평균 첫 결혼연령		남녀 초혼 비중
		남	여	남	여	
1965	41,693	81.4	59.9	26.0	22.9 ²⁾	83.3
1970	36,376	67.2	50.5	27.3	24.6	75.7
1980	26,448	36.7	28.7	27.5	24.8	62.3
1990	31,513	33.3	27.6	30.2	27.6	62.3
1995	34,736	35.1	29.4	32.6	29.4	62.5

주 : 1) 결혼율=결혼건수/결혼경험이 없는 1,000명

2) 1960년 통계

자료 : Knudsen, 1999.

다. 덴마크의 복지모델

덴마크 복지모델의 특징은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실업, 질병 또는 노령이 일정한 기초권리를 보장받는 데 있다. 이러한 복지모델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보편성: 모든 국민이 근로시장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서비스, 사회보장과 급여혜택에 대해 기득권을 보유함.
- ② 정부의 공공정책에 의한 복지제도의 원칙은 최하층 또는 빈곤층에게 가장 높은 경제적 보장과 권리를 부여한다는 데 기초함.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직접세 또는 간접세 세수로부터 마련됨.
- ③ 실업급여 및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지출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로 EU의 평균이 27%를 상회하며 이는 모

<표 III-2> 덴마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사회정책

연도	주요 특성	출산정책 및 규정	기타 사회정책 및 특성
1901 ~ 1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간의 출산율 하락 • 총출산율이 4로 감소 • 임신연령의 지연 • 젊은 산모의 반 이상이 미혼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 낙태에 대한 형법 기준(1866)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2: 기혼여성에게 동등한 양육권 부여 • 1925: 양부모가 생계유지에 대한 동등한 의무를 가짐
1933 ~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의 다변화 • 총출산율의 증가, 30세 이상 하락, 30세 이하 증가 • 임신 연령의 하락 • 산모의 대부분이 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7: 신생아 건강보호법 신설 • 1939: 임신중절법 도입 • 1939: 모성(특히 저소득 미혼모 보호법 신설) • 1939: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국립위원회 설치 • 1945: 산전관리법 통과 • 1956: 임신중절법의 개편 • 1960: 국립의료보험제도에 가족계획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3: 2주간의 산후휴가 도입 • 1950: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47% • 1950년대: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력 향상 • 1958: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45시간 • 연간 휴가가 3주로 연장 • 1960: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42.5% • 1960: 일부 직장여성들의 출산휴가가 14주로 연장 • 1960년대: 지속적인 여성의 경제력 향상
1963 ~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연령에서 출산율 감소 • 총출산율 하락 • 첫 출산의 지연 • 새로운 가족유형 출현: 합동 동거의 증가로 인한 미혼모 비중 증가 (높은 연령의 여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6: 피임도구 판매광고의 합법화 • 1967: 피임약 판매 실시 • 1970: 사회적 요소를 반영한 임신중절법의 보완 • 1976: 정부가 미혼모와 자녀를 위한 국립위원회를 인수 • 1981: 출산휴가에 4주간의 산전휴가를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4: 미취학아동 수업제도 도입(매일 3~4시간) • 1967: 개인 가정에서의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 1970: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54.0% • 1970: 개인소득세가 부부합산과세를 대체 • 1973/74: 실업율의 증가 • 1973/74: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감소 • 1979: 근로자의 연간 법정휴가가 5주로 연장 • 1980: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65%

(<표 III-2> 다음장에서 계속 →)

198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이 25%를 초과 · 총출산율의 증가 · 젊은층의 합의동거 증가 · 50% 신생아가 미혼모로부터 출산 · 첫 결혼연령이 첫 출산 연령을 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 민간부문에서의 새로운 모성보호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 실업률 급증 · 1984: 출산휴가가 20주로 연장 · 1984: 아버지들에게 출산 후 2주간의 신생아 양호휴가 허용과 함께 출산 14주 후의 부모간의 출산휴가 이전가능 · 1985: 출산휴가가 24주로 연장 · 1987: 주당 근로시간이 39시간으로 감소 · 1990: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71% · 1990: 주당 근로시간 : 37시간 · 1998: 직종에 따른 자녀 양호휴가권 신설, 14세 이하 자녀에 대해 연간 2일간의 휴가 부여. 공무원의 경우 연간 10일 허용 (1997년 4월 1일 이후 출생시)
-----------	---	---	--

자료 : Knudsen, 1999.

든 사회비용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함.

- ④ 소득분배: 이전급여의 지급을 통해 소득의 균등화를 지향하며 가구의 4% 정도만이 빈곤계층(OECD의 상대적인 저소득층 개념에 의한)에 포함됨. 이전지출의 80%가 이전급여 없이는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인구에게 지급됨.

GDP의 20%정도가 이전급여로 지출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장은 아동과 노인인구에 대한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따라서 여성의 노동참여를 높이는데 일조를 한다. GDP의 5%가 사회서비스(의료 서비스 제외)에 쓰여진다.

복지정책은 법적인 테두리하에서의 분권화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법적, 경제적 테두리 내에서 지침에 의해 지방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서 사회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한다. 즉 지방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정책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을 결정하게 되며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기본정책만을 수립한다.

라. 덴마크의 여성,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정책

덴마크의 자녀와 가족에 대한 정책의 기본원칙은 자녀의 성장기의 중심은 가족이며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주요 책임은 부모가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전한 사회구조와 가정이 자녀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전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더 나아가 정부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과 지침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부에서 결정하나 다양한 정책 및 조치는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은 정부로부터 현금급여와 서비스를 지급받는 등 모든 자녀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며 공공서비스는 자녀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포함한 성장기 동안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 일반적인 가족수당

일반적인 가족수당은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연간 1인당 0세~2세의 자녀에게는 10,200DKK(1996년 기준), 3세~6세의 미취학 자녀에게는 9,100DKK, 7세~17세의 자녀에게는 7,100 DKK가 각각 지급된다.

일반가족수당의 수급요건으로는 부모가 덴마크 납세자이며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고 결혼 또는 정부의 보조에 의해 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2) 자녀수당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다양한 종류의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일반자녀수당(ordinary child allowance)은 독신 부모와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양부모가 대상이며 자녀 당 연간 4,520DKK(1996년 기준)가 지급되고 있다. 추가자녀수당(extra child allowance)은 일반자녀수당에 추가로 자녀와 동거하는 독신 부모에게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3,452DKK가 지급된다. 특별자녀수당(special child allowance)은 한 쪽이나 양쪽 부모를 잃은 자녀 또는 친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된다. 또한 양쪽 부모가 연금수급자인 경우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도 특별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별자녀수당은 자녀 1인당 연간 8,676DKK가 지급되며 고아의 경우는 이 금액의 두 배가 지급된다.

다태아 출산수당(multiple birth allowance)이 자녀가 7세가 되기까지 자녀 1인당 연간 5,888DKK가 지급된다.

입양수당(adoption allowance)은 인정된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아동을 자녀로 입양할 경우 일시불로 32,212DKK를 정부가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입양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녀수당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여 하며 부모 중 1인이 덴마크 국적을 소유하거나 자녀수당을 지급받기 직전 최소 1년 전부터 덴마크에 거주하여야 한다. 특별자녀수당의 경우는 수급직전의 국내 거주기간이 최소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가 기혼이거나 정부로부터 부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자녀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일반규정

일반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매분기 초에 지급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일반 재정으로부터 지원된다.

일반가족수당, 특별자녀수당과 다태아 출산수당은 수당신청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일반자녀수당, 추가자녀수당, 입양수당 등은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 및 자녀수당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양육권자에게 지급되나 자녀를 위해 특별한 경우 자녀에게 직접 지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 및 자녀수당은 덴마크 국내에서만 지급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해외로도 송금된다.

4) 생계유지를 위한 양육비의 선지급제도

일반적으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한쪽 부모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자녀 양육비가 규정날짜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당국에 양육비의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당국은 차후에 해당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게 된다. 양육비의 선지급 대상은 특별자녀수당 대상과 동일하나 해외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임신, 출산 및 입양관련 일일현금급여

근로자, 자영자 및 배우자의 부양자는 모두 임신, 출산, 입양시 동등하게 일일현금급여에 대한 지급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일일현금급여는 지방당국이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할 경우 이를 지방당국이 환급해 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출산휴가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면이 존재하였다. 즉, 특정 위치에 있는 여성만이 그룹협상을 통해 가능하였다. 그러나 반면에 1933년부터 이미 2주간의 출산휴가는 임금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권리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

었으며 1960년에는 이러한 출산휴가가 14주로 연장되었다. 만약 출산 이전의 질병으로 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산전휴가기간이 14주에서 가감되었으나 출산 전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근로여성은 많은 경우 다른 산모보다 긴 산후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1년에는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의 기간에 상관없이 미리 산전휴가를 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84년에는 출산휴가가 20주로 연장되었으며 1년 뒤에는 24주로 더욱 연장되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산모와 함께 2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14주 이후에는 산모를 대신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산휴가의 대폭적인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이 증가하였다. 자녀가 8세 이하일 경우 부모는 12개월간의 양호휴가 기간이 허용되며 부모는 포기한 임금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최고실업수당의 85%까지 받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 양호휴가의 선택유형이 배우자간의 상대적인 소득에 따라 소득이 높은 남성의 경우는 산모가 휴가의 대부분을 사용하며 여성의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는 산모가 긴 육아휴가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이 육아휴가제도를 사용하는 많은 경우는 부부간의 소득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5년에는 40%의 신생아 아버지가 출산 후 2주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1995년에는 58%가 이러한 신생아 양호휴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출산 후 14주 이후의 부모의 육아휴가를 선택하는 남성은 3% 이하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활성화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측면에서 다소 후퇴한 것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여성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이러한 휴가기간 동안 임시직원을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최근에는 노사협상에 의해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는 연간 자녀 1인당 2일에 해당하는 양호휴가제도를 채택하였으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는 1997년 4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에 대해 연간 10일의 양호휴가가 허용된다.

가) 출산 관련혜택

출산 전 4주 동안 의사의 소견에 따라 산전휴가시 일일현금급여가 지급된다. 특수한 경우는 출산 4주 이전부터 유급산전휴가를 택할 수 있다. 또한 임산부가 산전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사용자가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일현금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출산 후 부모는 24주간의 유급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중 첫 14주는 산모만에게 적용되며 나머지 기간인 10주는 부모 중 한쪽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에게는 2주의 유급출산휴가가 적용된다. 이외에 산모가 질병 및 사망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아기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버지가 산모의 출산휴가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기가 입원한 경우는 추가로 3개월간 출산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입양시

입양부모 중의 한쪽은 입양 후 입양관련 당국의 결정에 따라 24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급휴가기간 동안이라도 마지막 10주 동안은 시험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며 근로가 행해진 날에 대해서는 해당 현금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는 임금으로 대체한다.

다) 지급규정

산후휴가와 관련된 현금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일정한 근로공급을 산후휴가 이전에 충족시켜야 한다. 근로자 중 산후휴가 직전 13주 동안 최소 120시간의 근로를 공급한

경우만이 산후휴가동안 일일현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영자와 자영자를 보조하는 배우자는 산후휴가 직전 1년 중 6개월 그리고 이 중 한 달은 휴가 직전에 주 평균 18시간 동안의 자영업관련 노동을 공급한 경우에 한해 산후휴가동안 일일현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급여는 주당 최고 2,617DKK가 지급된다.

6) 자녀 양호휴가제도(parental leave)

자녀 양호휴가제도의 도입취지는 부모가 자녀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추가로 노동시장 정책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노동이동률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 제도에 따르면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13주~52주의 지속적인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부모는 13주의 부모 양호휴가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26주의 휴가가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이 이상의 기간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호휴가를 선택하는 경우 공공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나 3세~8세의 자녀의 경우는 공공보육기관을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다.

자녀 양호휴가 기간 동안 부모는 일일현금급여의 70%의 혜택을 받는다. 추가로 지방당국이 연간 35,000DKK의 금액을 부모에게 임금보상 명목으로 지불할 수 있다.

7) 장애 및 심각한 질병의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질병에 걸린 자녀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가) 장애아동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자신의 가정

에서 돌보는 부모에게는 장애자녀를 돌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보조금의 부모의 소득 또는 자금사정과는 상관없이 지급되며 또한 임금의 보상 차원에서 일부금액을 지불한다.

나) 심각한 질병을 앓는 자녀

자녀가 심한 질병을 앓는 경우 부모는 정부로부터 자녀를 간호하는 동안 임금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는 14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25일 이상의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부모는 이 기간중 근로를 모두 중단하거나 시간제로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단, 독신 부모의 경우는 금전지원을 위한 25일간의 자녀의 입원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8) 보육시설

현재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나 1960년대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1973년에는 20% 이하의 0세~2세의 유아만이 공공보육시설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보육기관에 등록되어 보호를 받는 반면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43%가 경제활동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여성의 많은 비중이 비공식적인 보육시설 및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자녀의 보육을 맡긴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어린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신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보육료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보육료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0세~3세의 유아를 위한 유아보육시설(day nurseries)과 3세~6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kindergarten)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5세~6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미취학아동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

램이 제공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모든 나이를 통합한 보육시설이 형제, 자매를 위해 널리 애용되었으나 이후 질병의 감염의 예방 등의 차원에서 보다 소규모의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생아의 경우 산모가 직장으로 귀환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부모의 양호휴가가 보육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증가가 1979년부터 1985년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보다 연장된 산후휴가와 부모 양호휴가로 인해 1985년 이후에는 보육시설의 증가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최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가 보육시설 비용의 35%를 부담하고 있으며, 1998년 현재 0세~2세의 자녀 1인당 보육시설 이용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2,000DKK(약 350달러)이다.

9)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안정된 소득이 필요하며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덴마크에서의 여러 통계에 의하면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독신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의 일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는 안정된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²⁾에 의하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 다른 가정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부터 모든 18세 이하의 부양 자녀에게 자녀의 수 또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며 독신 부모에게는 이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된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자녀를 둔 가정간의 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Lisbeth B. Knudsen, "Recent Fertility Trends in Denmark," 1999.

2. 노르웨이

가. 출산율 및 사회의 변화

1980년대 초에는 노르웨이의 출산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약간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989년에는 출산율이 1.89를 기록하였다. 1998년에는 총 58,352명의 신생아가 출산되어 1.81의 출산율과 1999년에는 1.85의 출산율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는 유럽의 평균 출산율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높은 출산율은 가족 및 남녀평등 정책이 자녀의 보육시설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녀 모두 자녀에 대한 육아부담 없이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다.

<표 III-3> 노르웨이의 출산율¹⁾ 추이

(단위 : %)

1971~75	2.24	1994	1.87
1976~80	1.77	1995	1.87
1981~85	1.68	1996	1.89
1986~90	1.82	1997	1.86
1991~95	1.88	1998	1.81
		1999	1.85

주 : 1) 15~49세의 여성에 대한 연간 출산율.
 자료 : Statistical Year book of Norway, 1999.

나.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현금수당 지급규정

현재의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혜택 규정은 1998년 6월 26일의 법 제41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금수당법(Cash Benefit Act)으로도 칭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현금수당 혜택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녀의 보육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며 이전급여를 통해 가정간의 소득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급여의 지급대상은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1세~3세의 어린 자녀로 정부의 보조를 받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시간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 시간에 따라 수당액수가 다음과 같이 감액된다. 주당 15시간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액의 80%만이 지급되며 주당 16시간~20시간 이용시는 60%, 주당 21시간~30시간 이용시는 45%가 각각 지급된다. 또한 주당 해당 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이 31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어린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이 중단된다.

**<표 III-4> 노르웨이의 어린 자녀를 위한 현금수당 혜택
(1997년 기준)**

보육시설 이용시간(시간)	현금수당 지급비율(%)	현금 연간 수당금액(NKK)
0	100	36,000
1~15	80	28,800
16~20	60	21,600
21~30	45	16,200
31시간 이상	0	0

자료 :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The Rights of Parents of Small Children in Norway," 1998.

어린 자녀에 대한 수당은 사회보장당국에서 지급되며 부모가 동시에 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해당 자녀가 별거하고 있는 양쪽 부모가 양육권을 나누어 가진 경우는 수당을 양쪽 부모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어린 자녀에게 주어지는 수당의 재원은 정부가 전액 마련한다. 1999년 1월 1일 이전에는 어린 자녀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1세~2세의 자녀에게만 해당되었으나 1998년 8월 1일과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만 2세가 되는 자녀의 경우는 1999년 1월 1일까지도 수당혜택이 주어진다.

다. 부모의 출산 및 입양 관련 유급 육아휴가제도와 급여혜택

일반적으로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출생 후 최소 1년은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하에서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근로여성이 임금의 80% 수준의 급여혜택을 받고 1년간의 부모 육아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후 일괄보조금으로 32,138NKK(약 3,645달러)를 지급받는다. 또한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출산시와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표 III-5> 노르웨이의 자녀양육비 지급자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녀수	비율(%)
1	11
2	18
3	24
4 이상	28

자료 :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The Rights of Parents of Small Children in Norway," 1998.

자녀 입양시에도 양부모는 각각 4주의 입양휴가 기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한쪽 부모가 이 의무기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이전 되지 않고 무효화되나 나머지 입양관련 육아휴가기간은 부모간에 이전이 가능하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1,765 NKK(약 200달러)의 일괄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해외로부터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22,000NKK(약 2,500달러)의 현금 보조금이 지원된다. 부모의 육아 및 입양관련 급여는 통상임금과 같이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단, 일괄보조금의 경우는 과세가 면제된다.

다태아의 출산 또는 다수의 자녀를 동시에 입양할 경우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자녀 1인당 5주의 100%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가 적용되며 부모가 임금의 80%의 지급기준을 선택하는 경우는 7주의 유급 출산휴가가 해당된다. 비근로자의 경우는 자녀 1인당 일괄보조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또한 이들 부모들은 추가로 부여되는 유급휴가기간을 출산휴가 또는 시간계정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이 272,220NKK(약 31,000달러) 또는 국민연금의 기초금액의 6배(6G)를 상회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육아휴가 급여나 입양급여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육아휴가 급여는 병가급여와 동등하게 지난 4주의 임금에 기초하여 계산·지급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육아휴가 관련 급여가 연간 소득과 25% 이상 차이가 날 경우는 급여의 계산을 지난 3년간의 평균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지급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육아휴가 급여로 전환시 급여의 지급기준을 출산 전 10개월 중 6개월간의 최고 임금수준을 기초로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부모의 양육휴가 급여의 계산은 지난 3년간의 순소득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금액은 순소득의 65% 수준에서 지급되며 이는 6배(6G)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순소득의 100% 수준의 급여를 육아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질병보험을 들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52주간 순소득

의 80%를 지급받게 된다. 추가적인 질병보험은 출산 또는 입양 전 최소 10개월 전부터 가입해야 한다.

부모의 육아휴가와 관련된 시간계정("time account")제도³⁾에 따르면 육아휴가 기간중 시간제로 근로를 공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동시에 일부 육아휴가 급여혜택이 근로임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시간계정제도는 어린 자녀의 보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병행하려는 경우에 적합한 해결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가 시간계정의 이용을 위해서는 직장의 사용자와의 휴가 시작 4주 전에 동의를 얻어 서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지방 사회보장 당국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 육아휴가와 관련된 시간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가 기간은 52주간의 육아휴가 선택시는 3주의 산전휴가와 6주의 출산휴가 및 4주의 아버지 할당기간을 제외한 총 39주이며 42주 선택시는 총 29주가 각각 해당된다. 이러한 시간계정하에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경우 일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록 시간계정의 수명이 연장된다.

아버지의 육아휴가 할당제도(fathers' quota scheme)는 아버지들에게 출산 후 4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할당된 4주의 육아휴가를 아버지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다른 가족에게 이전되지 않고 동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에게 할당된 출산 후의 휴가는 산모가 최소한 정규 근로시간의 반 이상을 근무할 경우 적용된다. 아버지의 육아휴가 할당기간은 출산 후 6주 내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사용자와의 협상에 의해 20주 동안 매주 1일씩 할당된 4주의 휴가를 시간계정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주중 4일만의 육아휴가를 산모가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의 육아휴가 할당제도는 199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로

3) 이는 국민연금법 제14장과 근로환경법 3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인해 많은 아버지들이 출산 후 육아휴가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7년부터 아버지도 육아휴가 제도를 산모와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매우 적은 수의 아버지들이 이를 이용하였다. 아버지 육아휴가 할당제도의 도입 취지는 아버지들로 하여금 어린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아버지의 육아에 대한 참여도의 증가는 가족 내에서의 남녀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의 남성이 아버지에게 할당된 4주간의 육아휴가 혜택을 사용하고 있고 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점점 더욱 많은 수의 아버지들이 부모 육아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모는 의무적으로 출산 전 3주간의 산전휴가를 택해야 하며 산후 6주의 출산휴가는 산모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부모간 이전이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아버지 할당의 육아휴가 기간 이상의 기간인 육아휴가 선택시는 산모가 정규직으로 복직하였거나 정규학생인 경우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산모가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는 병가수당이 산모에게 지급된다. 신생아가 출산 후 사망한 경우에도 산모에게 6주간의 출산휴가가 적용되나 입양 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이러한 부모 육아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1년간의 유급 육아휴가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1년간의 무급 육아휴가를 부모가 각각 신청할 수 있어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육아휴가 이후 종전의 직장으로의 복직이 보장되어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를 돌보는 동안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경우 연간 10일간의 유급양호휴가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자녀가 셋 이상의 경우는 부모에게 각각 15일간의 양호휴가가 허용된다. 또한 독신 부모의 경우는 혼자서 양쪽 부모에게 주어지는 20일과 30일의 양호

<표 III-6> 노르웨이의 출산관련 부모급여(parental benefit)와 일괄보조금(1977~2000년)

(단위 : NKK)

년도		임금100% 지급기준	임금 80% 지급기준	일괄 보조금
1977	일괄보조금 도입	18주		2,880
1987		20주		4,360
1988		22주		4,730
1989	육아 휴가시 임금의 80% 지급제도 신설	24주	30주	6,147
1990		28주	35주	8,750
1991	2주의 산전의무휴가 포함	32주	40주	10,750
1992	산전 2주 휴가 포함	35주	44.2주	14,825
1993	산전 3주 의무휴가 포함. 아버지 할당휴가 도입	42주	52주	17,790
1994	부모의 육아휴가 시간계정 도입	42주	52주	23,275
1995		42주	52주	25,625
1996		42주	52주	32,138
:				
:				
2000		42주	52주	32,138

자료 :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2000.

휴가가 적용된다. 이러한 육아휴가 시간계정제도와 양호휴가 등은 개인의 필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라.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가족수당은 가족수당법의 규정에 의해 운영된다. 노르웨이에서 가족수당은 자녀를 둔 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다.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은 노르웨이에 영주하는 16세 이하의 자녀와 동거하는 모든 가정이 해당되며 출산 및 입양과 더불어 지급이 시작된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거주기간이 최소 12개월을 만족해야 하며 지속적인 해외 체류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만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은 자녀의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1998년 9월 1일부터는 신청없이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자동적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가족수당 액수는 국회에서 매년 결정하며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자녀의 수가 다섯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14,136NKK(약 1,600달러)의 가족수당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Finmark와 North Troms 지방 등 인구가 적은 지역 또는 저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연간 3,792NKK(430달러)의 추가적인 가족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자녀의 수가 1인인 가정의 가족수당은 2000년 기준 연간 9,948 NKK(1,128달러)이며 2인은 19,896NKK(2,256달러), 3인은 30,840 NKK(3,500달러), 4인인 경우는 41,784NKK(4,734달러) 수준이다. 2000년의 가족수당 금액은 1996년 이후 최초로 상당 수준 감소하였다.

1세~3세의 어린 자녀에 대해서는 7,884NKK(895달러)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0세~3세의 어린 자녀를 둔 독신 부모 가정에 한해서는 특별 가족수당이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어린 자녀에게 지급되는 추가지원 이외에 또 7,884NKK(895달러)가 지급된다.

<표 III-7> 노르웨이의 자녀 수에 대한 연간 일반가족수당
(ordinary family allowances): 1946~2000년

(단위 : NKK)

적용개시일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01.10.46	0(180 ¹⁾)	180	180	180	180
01.04.51	0(240 ¹⁾)	240	240	240	240
01.04.56	0(300 ¹⁾)	300	300	300	300
01.07.58	0(360 ¹⁾)	360	360	360	360
01.01.63	0(400 ¹⁾)	400	500	600	700
01.01.67	0(450 ¹⁾)	450	600	750	900
01.10.67	0(500 ¹⁾)	500	650	850	1,000
01.07.68	0(550 ¹⁾)	550	700	900	1,100
01.01.70	500	1,500	2,000	2,200	2,400
01.10.72	550	1,650	2,200	2,420	2,640
01.05.74	550	1,650	2,400	2,620	2,840
01.11.75	600	1,824	2,844	3,120	3,408
01.06.76	708	1,932	2,952	3,228	3,516
01.01.79	804	2,203	3,048	3,324	3,612
01.10.79	1,200	2,424	3,444	3,720	4,008
01.05.80	2,100	3,324	4,344	4,620	4,908
01.01.81	2,652	3,516	4,536	4,812	5,100
01.01.82	3,252	4,008	5,028	5,412	5,700
01.01.83	3,816	4,644	5,772	6,204	6,516
01.01.84	4,614	5,028	6,228	6,684	7,020
01.01.85	4,524	5,436	6,804	7,272	7,632
01.01.86	5,256	5,808	7,224	7,848	8,232
01.07.86	5,448	6,000	7,416	8,040	8,424
01.01.87	6,180	6,672	8,088	8,712	9,096
01.01.88	7,188	7,680	9,096	9,720	10,104
01.01.89	7,836	8,328	9,744	10,368	10,752
01.01.90	8,748	9,240	10,656	11,280	11,664
01.01.91	9,408	9,900	11,316	11,940	12,324
01.01.92	10,212	10,704	12,102	12,744	13,128
01.01.93	10,212	10,704	12,120	12,744	13,128
01.01.94	10,416	10,920	12,360	12,996	13,392
01.01.95	10,572	11,088	12,552	13,200	13,596
01.07.96	11,112	11,628	13,092	13,740	14,136
01.01.99	11,112	11,112	13,092	13,092	13,092
01.01.00	9,948	9,948	10,944	10,944	10,944

주 : 1) 1946년~1969년까지는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독신
가장에게만 지급되었음.

자료 :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2000.

조세규정과 관련하여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의 경우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부양자 공제(provider allowance)는 19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공제로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는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다. 1998년 부양자 공제는 16세 이하의 부양자녀에 대해 연간 1,820NKK(206달러)가 허용되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16세~18세인 경우는 자녀 1인당 2,540NKK(288달러)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다. 만약 16세 이상의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공제가 감액되거나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16세~18세 사이의 자녀를 가진 독신 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2,540NKK(288달러)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보육료 비용의 공제 명목의 소득공제인 부모공제(parental allowance)가 허용된다. 부모공제는 자녀가 1인인 경우 최고 20,700NKK(2,350달러)가 허용되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는 24,700NKK(2,800달러)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부모공제는 부모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또한 장애인 자녀의 경우 관련비용에 대해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도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노르웨이는 2인 소득 가정과 1인 소득 가정 및 독신가장 가정이 다른 과세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2인 소득 가정은 과세 제1등급(tax class 1), 1인 소득 가정 및 독신가장 가정은 과세 제2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1등급의 경우는 25,000NKK(2,835달러)의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반면 제2등급은 50,000NKK(5,670달러)가 허용된다.

마. 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 당국은 독신부모 가정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경우 근로임금을 통해 생계와 자녀의 부양을 할 수 있기까지 정부의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

일시적인 지원으로 transitional benefit이 지급된다. 이러한 지원은 최고 3년간 제일 어린 자녀의 출산 직후 또는 출산 전 2개월부터 지급된다. 추가적인 지원은 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인 경우만이 해당된다. 3년간의 지원 만기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독신 부모가 취학을 하거나 취업 또는 구직 중이어야 한다. 임시급여의 액수는 기초 연금액의 1.85배에 해당하며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급여의 액수가 감액된다. 1998년 5월부터 독신가장을 위한 일시적인 급여의 액수는 매월 6,995NKK(약 800달러)씩 지원되고 있다. 수혜자의 연간 소득이 23,000NKK(2,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금액이 감액되며 연간 소득이 233,000NKK (26,400달러)를 초과할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바. 독신 부모를 위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정부는 독신 부모가 직장 또는 취학, 구직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의 규모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의 70% 수준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최고 자녀 1인당 매달 2,300NKK, 2인당 3,000NKK, 3인 이상의 경우 3,400NKK의 비용을 지불한다.

해당 독신 부모의 연간 소득이 연간 기초 연금액(45,370NKK)의 6배~8배 수준인 경우는 보육료 지원금액이 50% 감액되며 연간 소득이 8배 수준 초과시는 지원이 중단된다. 일반적으로 보육료 지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사. 자녀 양육비의 선지급제도(maintenance advance)

독신 가정은 자녀의 생계유지를 위해 자녀 양육비의 선지급을 자녀 1인당 12,840NKK까지 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당국은 차후에

자녀 양육비 지급의무를 진 해당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한다. 만일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보장당국이 최소 금액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 양육비의 최소한의 수준은 부모간의 협의 또는 법정에 의해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정부가 제시하는 양육비 최소 기준에 따라 양육비 지급자의 총소득에서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표 III-8> 노르웨이 정부가 제시하는 자녀 양육비 최소기준

자녀수	양육비 지급자의 총소득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1	11
2	18
3	24
4 이상	28

자료 :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1999.

아. 기타 지원

미혼모를 비롯한 독신 가장이 교육 또는 기술습득을 받는 경우 교육보조금(education benefit)이 지원된다. 또한 독신 가장이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3. 스웨덴

가. 가족과 자녀를 위한 재정보조

스웨덴의 경우 최근 몇 년간의 가족과 자녀를 위한 사회보험지출을 살펴보면(<표 III-9>참조) 1997년에는 모든 부문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중면에서는 자녀수당과 부모보험이 각각 30%를 상회하는 등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9> 스웨덴의 사회보험 지출(1996~1998년)

(단위 : 백만 SEK)

사회보험 및 급여의 유형	1996	1997	1998 prelimin
가족과 자녀를 위한 재정지원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14,210	13,282	14,135
자녀수당(Child allowance)	14,577	14,424	16,830
자녀 있는 가정과 젊은층을 위한 주택급여(Housing benefit for families with children and for young people)	8,373	6,195	5,757
장애아동 지원금(Care allowance for disabled children)	1,496	1,567	1,656
선급생계비 등(Maintenance advance, etc.)	4,648	.	.
생계지원금(Maintenance support)	.	4,518	4,583
고아연금(Child pension)	288	287	286
기초연금(Basic pension)	623	630	634
보족연금(Supplementary pension (ATP))	.	20	18
계	44,215	40,923	43,899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1) 출산에 대한 현금급여(Parental cash for the birth of a child)

부모보험제도는 근로자 부모를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또한 이는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여성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보다 폭넓게 부모급여 기간을 사용해 왔다. 약 30만명의 여성(69%)과 13만 5천명의 남성(31%)이 1997년에 부모급여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2/3가 35세 미만이었다.

노령층을 제외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총 부모급여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남성은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 이 연령대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수가 상당히 적은 반면 나이가 든 남성은 계속 젊은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갖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부모급여 혜택을 받는다. 여성은 1997년중에 출산에 대한 현금급여혜택이 지급되는 모든 일수의 90%를 사용한 반면 남성은 10% 미만을 사용하였다.

1990년 전후에 태어난 많은 수의 자녀의 영향이 수치에 명백히 나타난다. 출산에 대한 현금급여혜택이 지급되는 일수는 출산율의 하락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에 대한 현금급여혜택이 지급되는 일수는 1992년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출산 또는 입양에 대한 출산에 대한 현금급여혜택은 자녀 1인당 총 450일이 가능하다. 360일에 대한 급여혜택은 부모의 소득 손실과 관련한 금액인데, 최저액이 1일 60SEK이다. 남은 90일에 대해서는 1일 60SEK가 보장된다. 만일 부모가 함께 자녀를 보호한다면, 그들 각각은 출산에 대한 현금급여혜택 총 일수의 1/2씩 자격이 있다. 아버지/어머니의 달로 알려진 30일을 제외하고는 부모 중 1인이 자신의 권리를 다른 부모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는 각각 100%, 75%, 50%, 25%로 지급수준이 다르다. 육아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보통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지 받을 수 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수준은 소득의 80%이며 1997년의 보상수준은 75%이었다. 최고 부모급여의 액수는 월 17,000 SEK였다.

1996년 4월에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질병급여 수준에서 모든 가능한 출산에 대한 현금급여혜택 일수의 약 5%와 보장수준에서 모든 일수의 약 20%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1997년에 출산으로 인한 출산에 대한 현금급여혜택에 100억 SEK가 지급되었고, 약 90억 SEK(87%)는 여성에게, 14억 SEK(13%)는 남성에게 지급되었다. 1998년에선 110억 SEK가 지급되었다.

<표 III-10> 자녀 출산을 위한 부모 현금급여(1997년)

연령	수혜자 수		평균 수혜일		연간평균금액(SEK)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5	12	0	161	-	12,239	-
16~19	1,752	34	173	69	11,895	5,966
20~24	25,529	3,221	158	33	29,252	9,578
25~29	79,931	24,561	135	28	35,687	9,548
30~34	104,973	47,721	112	28	32,398	10,430
35~39	60,820	33,605	91	28	25,501	10,364
40~44	22,411	16,730	69	28	18,364	10,172
45~49	4,027	5,788	41	28	9,660	10,177
50~54	371	1,821	35	33	6,790	11,459
55~	15	467	38	36	6,325	12,239
합계	299,841	133,948	114	28	30,100	10,207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2) 일시적 부모현금급여(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일시적 부모의 현금급여 지급제도는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직장을 잠시 떠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육아휴가인 father's days를 위한 일시적 부모급여를 얻을 수도 있다.

1997년에 약 70만명이 자녀 양육을 위한 단기간의 일시적인 부모급여를 사용하였다. 그들 중 62%가 여성이었고 남성이 38%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는 남성의 비중이 출산으로 인한 부모급여를 받는 남성의 비중보다 약간 크다.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일시적인 부모급여제도는 주로 여성에 의해 사용된다. 1997년에 여성이 69%, 남성이 31% 사용하였다.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년 동안 감소해왔다.

자녀의 수가 1990년대에 증가했으며, 질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 일수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보상수준의 감소뿐만 아니라 실업의 증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일하는 대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는 부모급여에 대한 자격이 있다. 이것은 자녀가 12세 미만인 경우만이 적용한다(일부의 경우 16세 미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자녀 1인당 연간 6일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정 기능적 장애인을 위한 법(Swedish Act on Support and Service)에 의해 보호되는 자녀를 둔 부모는 16세에서 21세(일부의 경우 21세 이상)까지의 질병을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15세 이상이고 기관에 의해 보호되는 자녀의 부모는 또한 자녀 1인당 연간 10일의 접촉일수(contact days)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일수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도록 자녀를 도와주기 위한 부모 훈련과정을 위해 또는 취학 전이나 학교에 다니는 동안 방문을 위해 사용된다.

부모에 대한 임시현금수당에 대한 권리는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고 집에 머무는 사람에게 이전될 수도 있다. 급여혜택은 100%, 75%, 50%, 25%로 지급수준이 차등화되어 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수준은 질병급여가 적용되는 소득의 80%이었다. 1997년의 보상수준은 75%이었다. 최고 부모급여는 월 17,000SEK였다. 1997년 자녀 양육을 위한 일시적 현금급여혜택에 약 23억 SEK가 지급되었다. 14억 SEK(64%)가 여성에게 8억SEK(36%)가 남성에게 지급되었다.

<표 III-11> 자녀 양육을 위한 일시적 현금급여(1997년)

연령	수혜자 수		평균 수혜일수		연평균금액(SEK)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6~19	36	9	7	4	1,691	1,624
20~24	6,935	2,426	8	6	2,976	2,956
25~29	57,578	27,539	8	6	3,605	3,203
30~34	130,025	76,930	8	6	3,733	3,304
35~39	121,593	74,643	7	5	3,381	3,155
40~44	77,189	52,149	6	5	2,963	2,881
45~49	27,487	23,719	5	4	2,620	2,682
50~54	6,734	7,913	4	5	2,240	2,697
55~59	2,063	1,751	3	5	1,522	2,553
60~	937	435	3	4	1,372	2,342
합계	430,577	267,514	7	5	3,356	3,087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나. 아버지의 출산휴가(father's days)

아버지의 출산휴가는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났을 때 더 나이가 든 자녀를 아버지가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태어난 아기가 첫 번째 자녀라면 아버지는 이러한 출산휴가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더 나이 많은 형제의 조건에 따른 아버지의 출산휴가 요건이 폐지되어 출산시 모든 아버지에게 출산휴가 자격이 부여된다.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아버지는 자녀 1인당 10일간의 일시적인 유급부모 휴가(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의 자격이 있다. 이는 자녀가 태어난 지 또는 입양부모에 의한 보호가 시작된 지 60일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표 III-12> 아버지의 날(1997년)

연령	수혜자 수	평균수혜일수	연평균금액(SEK)
16~19	20	9.0	3,291
20~24	2,871	9.3	4,652
25~29	17,174	9.4	5,303
30~34	25,185	9.4	5,711
35~39	13,216	9.4	5,807
40~44	5,067	9.4	5,766
45~49	1,566	9.4	5,682
50~54	471	9.1	5,550
55~59	94	8.7	5,680
60~64	15	8.8	4,666
합계	65,679	9.4	5,579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수준은 병가수당 적용되는 소득의 80%이다. 1997년에는 보상수준이 75%이었다.

1997년에 약 3,700억 SEK가 아버지의 날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지출되었다.

다. 임신부 현금급여(pregnancy cash benefit)

임산부 현금급여혜택은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휴식을 취하는 임신한 여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1980년 신체적으로 무리한 직업을 가진 여성을 위해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이후 임신부 현금급여 혜택에 대한 권리는 작업환경에 의해 태아 또는 임신부에 있을 위험 때문에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여성으로 확대되었다.

<표 III-13> 임신부 현금급여(1997년)

연령	수혜자 수	평균 수혜일수	연평균금액(SEK)
16~19	19	42	10,526
20~24	2,576	37	11,413
25~29	8,194	37	12,399
30~34	6,700	37	12,627
35~39	2,420	37	12,975
40~44	473	37	13,108
45~49	14	43	14,286
합계	20,396	37	12,434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사회보장당국은 만일 여성의 고용주가 다른 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임신부 현금급여혜택을 지급한다. 여성은 임신한 마지막 달의 최고 50일간 임신부 현금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수준은 병가수당이 적용되는 소득의 80% 수준이다. 1997년에 보상수준은 75%였다. 최고 임신부 현금급여혜택은 월 17,000SEK였다.

1997년에 약 2억 5천만 SEK가 2만명의 여성에게 임신부 현금급여가 지급되었다.

라. 자녀수당

자녀수당제도는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불균형을 고르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자녀수당은 기초 자녀수당, 확대 자녀수당, 추가 자녀수당으로 구성된다.

모든 부모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녀가 16세가 된 해의 1/4분기까지 기초 자녀수당에 대한 자격이 있다. 이 이후 부모는 확대된 자녀수당을 자녀가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다.

기초 자녀수당, 확대 자녀수당 또는 3세 이상 자녀를 위한 학습보조금을 받는 부모는 또한 추가적인 자녀수당을 받는다. 1996년과 1997년중에 규정이 바뀌어 새로운 추가적 자녀수당의 지급은 없었다. 그러나 1998년 1월 1일 이후 다시 지급되었다. 1997년에 자녀수당은 자녀 1인당 월 640SEK였다. 자녀수당은 세금이 면제된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자녀수당은 자녀 1인당 월 750SEK이다. 추가적 자녀수당은 세 번째 자녀에 대해 월 200SEK, 네 번째 자녀에 대해 월 600SEK, 다섯 번째와 그 이후 모든 자녀에 대해서는 월 750SEK이다.

<표 III-14> 스웨덴의 자녀수당

(단위 : SEK)

	월간 총 자녀수당	추가적 자녀수당	합 계	연간합계
1 child	750	-	750	9,000
2 children	1,500	-	1,500	18,000
3 children	2,250	200	2,450	29,400
4 children	3,000	800	3,800	45,600
5 children	3,750	1,550	5,300	63,600
For every additional child:	750	750	1,500	18,000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마. 고아연금(child pension)

만일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고아연금(child pension)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녀는 17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학생이면, 특정 경우 20세가 되는 해의 6월까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기초연금제도로부터 받는 자녀연금은 최소한 사망한 부모 각각에 대해 기초금액의 25%이고 1997년에 월 750SEK였다.

추가적 연금제도로부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추가적 연금(ATP)의 30%를 받는다. 만일 자녀에게 형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ATP합계의 20%가 각각의 형제에게 더해지고, 합계액이 자녀간에 동일하게 분배된다.

자녀 1인을 위한 총 고아연금(기초연금과 추가연금)은 항상 최소한 사망한 부모의 연간 기초금액의 40%이어야 한다. 그것은 1997년

에 월 1,200SEK이었다.

1997년에 약 8억 8천만 SEK가 자녀연금으로 지급되었다. 4억 3천만 SEK가 소녀에게 4억 5천만 SEK가 소년에게 지급되었다.

<표 III-15> 고아연금(1997년)

연령	수혜자 수	
	여자	남자
0~4	521	540
5~9	2,479	2,709
10~14	4,816	5,102
15~19	7,020	7,261
합계	14,836	15,612
월평균금액(SEK)	2,421	2,425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바. 생계유지비 지원(maintenance support)

생계유지비 지원제도는 함께 살지 않는 자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부모를 위해 고안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자녀들에게 합리적인 최소의 경제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1997년 2월 1일, 자녀양육에 대한 새로운 보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생계유지비 지원제도(maintenance support)라고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생계유지비 지원은 이전의 생계유지비 선지급제도와 입양자녀를 위한 특별수당을 대신한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생계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하며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수당을 지불함으로써 부양의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 합의 또는 법정에 의해 생계유지를 위한 양육비의 수준이 결정될 때 자녀의 요구와 부모의 전반적인 재정수단이 고려된다.

다음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사회보장당국으로부터 자녀의 생계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

- ① 양육비 지급자가 자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② 생계유지비가 월 1,173SEK 미만으로 결정된 경우 생계유지 보조금은 보조적인 수당형태로 지급된다.
- ③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 ④ 부모 1인이 사망하였고 자녀가 자녀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⑤ 자녀가 독신부모에 의해 입양된 경우

<표 III-16> 생계보조금을 받는 아동의 수(1997년 12월)

(단위 : 명, %)

연령	여자	남자	각 연령계급에서의 비중	
			여자	남자
0~4	20,401	21,272	7.6	7.5
5~9	50,277	52,704	16.3	17.1
10~14	51,758	54,614	20.9	20.8
15~19	31,086	32,741	20.9	21.0
합계	153,522	161,331	15.8	15.7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생계유지 지원금의 최고액은 자녀 1인당 월 1,173SEK이다.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는 부모는 차후 해당금액을 사회보

장당국에 지불해야 한다. 지불의무의 수준은 최근 소득세 신고서상의 부모의 소득의 특정 비율로 정한다. 수치는 자녀의 수를 기초로 정해진다.

만일 생계유지를 위한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지불에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지급을 회피할 수 있다. 만일 지불의무가 있는 부모가 지급을 거절하면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표 III-17> 생계보조금(1997년)

(단위 : 명, SEK)

연령	수혜자 수		평균금액(12월)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9 ¹⁾	9,287	9,952	1,088	1,075
20~24	4,892	89	1,303	1,203
25~29	19,038	721	1,539	1,369
30~34	40,170	2,896	1,786	1,465
35~39	46,564	5,590	1,890	1,524
40~44	38,523	7,446	1,737	1,472
45~49	21,433	5,420	1,544	1,396
50~54	8,743	2,538	1,402	1,353
55~59	1,712	839	1,310	1,380
60~	174	348	1,413	1,357
합계	190,536	35,839	1,681	1,344

주 : 1) Including redipients of extended maintenance support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표 III-18> 생계유지를 위한 양육비 지불에 대한 채무가 있는 부모(1997년 12월 기준)

(단위 : 명, SEK)

연령	명수		채무자 수		평균 채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24	491	3,501	129	1,323	4,066	6,442
25~29	2,169	13,804	1,038	7,667	5,987	12,396
30~34	5,609	33,189	2,544	18,605	6,987	17,321
35~39	8,542	41,640	3,743	23,169	7,251	19,752
40~44	7,791	44,653	3,565	25,332	7,245	20,265
45~49	3,860	33,421	1,896	19,915	7,862	19,284
50~54	1,319	18,668	672	11,585	7,305	18,383
55~59	203	6,468	126	3,922	7,985	17,480
60~	16	2,908	11	1,650	4,969	13,863
합계	30,000	198,252	13,724	113,168	7,167	18,427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사. 주택급여혜택(housing benefit)

주택급여는 재정적으로 약한 가정이 적절하고 충분한 공간의 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젊은 가구(28세 이하)는 주택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녀를 위한 특별수당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택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사는 자녀를 위한 특별수당은 자녀의 수와 가정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급여는 자녀의 수, 주택비용, 주택의 크기, 가정

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1997년 1월 1일에 주택급여에 적용할 소득을 추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원자는 그들이 12개월간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인지 추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기초주택급여가 산출된다. 다음으로 소득정보는 과세된 소득에 대해 검토되고 최종적으로 주택급여가 산출된다. 1997년에 지급된 급여의 대조가 1999년에 이루어졌다. 너무 많은 기초급여를 받은 가정은 그 차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고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다. 만일 기초급여를 너무 적게 받은 가정은 차액의 이자를 추가로 받는다.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동거자에게 주택급여는 개인별로 자산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만일 소득이 배우자 각각 58,500SEK를 초과하면 급여가 감소한다. 한편 독신의 경우 주택급여는 연 소득이 117,000 SEK를 초과하면 감소한다.

<표 III-19> 주택급여 혜택

자녀의 수	월별 최고주택급여 (SEK)	최고 주거면적 (Square Metres)	주택수당이 감액되는 연간 소득상한액(SEK)	
			독신	부부/동거자
1	2,500	80	117,000	58,500
2	3,175	100	117,000	58,500
3	3,900	120	117,000	58,500
4	4,200	140	117,000	58,500
5 이상	4,500	160	117,000	58,500
자녀없는 18~28세 가구주	1,100	60	41,000	58,000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표 III-20> 주택급여(1997년 12월)

연령	가구유형별 수			월평균금액(SEK)		
	독신		동거자	독신		동거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4	28,522	18,924	12,635	917	607	1,208
25~29	24,135	9,515	17,922	1,668	780	1,477
30~34	32,219	6,892	24,555	1,994	1,089	1,538
35~39	34,071	8,570	21,830	1,954	1,137	1,576
40~44	31,173	8,508	13,480	1,712	1,151	1,546
45~49	19,610	5,986	5,691	1,488	1,145	1,472
50~54	8,034	3,208	1,885	1,392	1,138	1,433
55~59	1,838	1,095	565	1,419	1,178	1,408
60~	297	621	172	1,597	1,173	1,570
합계	179,899	63,319	98,735	1,634	923	1,488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아. 장애아동을 위한 간호수당(care allowance for disabled children)

간호수당은 가정에서 질병 또는 기능적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위한 재정지원 형태이다.

만일 자녀가 16세 미만이고 질병, 정신지체, 또는 다른 형태의 기능적 장애로 인해 최소한 6개월 동안 특별한 주의와 보호를 필요로 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한 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자녀의 질병 또는 기능적 장애가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면 부모는 또한 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부모가 몇 가지 질병이 있거나 기능적으

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권리는 주 의와 간호에 필요한 총액과 증가된 비용까지를 기초로 한다.

간호수당은 기초연금급여를 기준으로 급여의 100%, 75%, 50%, 25%가 지급된다. 전액 간호수당은 연간 기초금액(1997년에 90,750 SEK 또는 월 약 7,500SEK임)의 2.5배이다. 간호수당은 과세대상이 다. 증가된 비용을 위한 간호수당은 과세가 면제된다. 특정 상황에서 추가적 비용에 대한 보상은 정상 급여 전액보다 더 많을 수 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보상만 요구하더라도 부모는 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간호수당은 추가적인 비용의 규모에 따른 연간 기초금액의 36% 또는 62.5%이다.

<표 III-21> 간호수당(1997년)

(단위 : 명, SEK)

연령	수혜자수(부모)		월평균 금액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4	275	7	4,633	5,214
25~29	2,032	58	4,674	4,132
30~34	5,874	343	4,726	4,134
35~39	6,753	493	4,702	4,132
40~44	4,956	542	4,742	4,154
45~49	2,285	376	4,984	4,246
50~54	727	159	4,969	4,234
55~	102	69	4,999	4,124
합계	23,004	2,047	4,713	4,171

자료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1999.

4. 핀란드

핀란드의 가족과 자녀지원을 위한 지출의 액수는 최근 몇 년간 변경되지 않았으며 지출의 GDP의 비중은 3%를 상회하나 지속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다(<표 III-22>참조).

<표 III-22> 핀란드의 가정과 자녀

	1997	1998 ¹⁾	1999 ²⁾	2000 ²⁾
지출의 주요부문(FIM million)	22,810	23,400	23,700	23,900
- 현금급여(백만FIM)	13,874	14,000	13,900	14,000
사회보장지출 비중	12.3	12.5	12.5	12.3
GDP비중	3.6	3.4	3.3	3.2
부모급여를 수취한 어머니수(12. 31)	49,900	48,400	48,400	48,000
지방 보육시설의 아동수(12. 31)	219,700	218,500	220,000	218,000
가정내 보육수당 수취 가정(12. 31)	75,500	74,400	72,000	71,500
민간 보육시설이용 수당 수취 아동수(12. 31)	9,700	12,800	14,000	14,000

주: 1) 예비자료
2) 추정치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nance and Planning Department, 1999.

가. 자녀 있는 가정을 위한 주요지원제도인 자녀보조금과 탁아시설(child allowance and daycare arrangements as the main forms of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가정지원제도의 목적은 가족에게 탁아시설이 가족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자녀들을 위해 제공하는 것

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데 있다. 자녀보조금(child allowance)과 탁아시설(daycare)은 아직도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주요 지원형태이다.

자녀보조금으로 인한 지출은 1998년에 84억 FIM에 이른다. 출산율의 감소로 최근에 지출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1994년 독신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높은 비율의 자녀보조금을 받았다. 독신 부모를 위한 추가적인 보조금(supplement) 제도의 수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말 독신 부모를 위한 보조금이 15만 4천 자녀에게 지급되었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3,400명 증가한 수치이다.

parenthood allowance에 지출한 것은 1998년에 27억 FIM에 이른다. 이러한 지출이 최근에 감소하는 것은 일부는 출산율의 하락 때문이다. 또한 최소 부모수당을 받는 어머니의 수가 6%에서 28%로 증가하는 원인이었던 경기후퇴 때문이기도 하다.

1998년에 대한 예측에 따르면, 아이들의 탁아시설에 대한 총지출은 전년도보다 약 3억 5천만 FIM이 더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탁아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개선된 고용률은 또한 탁아시설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초 자료에 의하면 1998년 총 탁아시설지출은 85억 FIM이 될 것이고 탁아시설료로 15%는 충당된다.

1998년에 법정자녀 가정보육보조금(statutory child home care allowance)에 대한 지출은 20억 FIM이다. 이 중 1억 2,800만 FIM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다. 새로운 지원제도인 민간보육시설보조금(private child care allowance)으로 1억 700만 FIM이 지출되었다. part-time care allowance의 흡수는 상당히 제한되었다. 지방자치체는 지방보조금으로 법정지원을 보충할 수 있다. 1998년에 총 1억 9,100만 FIM이 가정보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위한 지방보조금으로, 5,700만 FIM이 민간보육수당에 대한 지방보조금으로 사회보장당국(Social

Insurance Institution)을 통해 지급되었다. 지방자치체는 지방탁아시설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키고자 지방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방보조금은 특히 규모가 큰 지방자치체에서 도입되었다.

1998년엔 주택보조금(housing allowance) 13억 FIM이 자녀 있는 가정에 지급되었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6,400만 FIM 증가한 금액이다. 이러한 증가는 1998년 초에 시작된 주택보조금의 수준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주택보조금은 자녀 있는 8만 2천 가정에 지급되었고 이들 가정의 61%가 독신 부모인 가정이었다. 그러나 주택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나. 어린 자녀의 보호

1990년대는 어린 자녀의 보호를 위한 규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990년에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지방탁아시설(municipal daycare for child) 또는 자녀가정보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 모두에 대한 권리가 있었으며, 1996년에는 지방탁아시설에 대한 권리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확대되었다. 어린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는 1997년 8월 1일에 개정되었고, 그 목적은 제도를 투명화, 단순화하고 지방간 탁아시설비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1999년 초 취학 전 아동의 약 48%가 지방탁아시설을 이용하였고 25%는 자녀가정보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민간탁아시설(private daycare)은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약 3%가 민간보육수당을 받고 있다. 약 12%인 5만명의 아동이 지원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동들은 실업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보호되거나 3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집에서 보호되고 형제가 없는 3세 미만인 아동은 가정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3세 미만의 아동 중 약 26% 정도가 가정 이외의 곳에서 보호되고

있고 대부분(69%)의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되고 가정보육수당이나 부모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약 5%의 아동은 모든 지원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실업부모의 자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를 선택하기 위해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실업급여가 자녀가정보육수당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자녀보호제도(child care arrangement)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다. 3~6세 아동 3명 중 2명은 지방탁아시설을 이용한다.

1)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의 감소(Falling demand for daycare)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21만 9,900명의 아동이 1999년 1월 말에 지방탁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탁아시설에 있는 취학 전 아동은 1997년 이래 약 9천명 정도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취학연령의 아동은 감소하였다. 약 7천명의 취학 아동이 탁아시설에 있고 2년 전보다 2천명이 줄었다. 전체 아동의 65%가 탁아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35%는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체는 탁아시설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에 따라 성공적으로 탁아시설을 마련하였다. 더 큰 지방자치체는 새로운 탁아시설을 설립하였고 작은 지방자치체는 보육시설을 증가시켰다. 연구에 따르면, 28개의 지방자치체에서 탁아시설이 부족하고 2개의 지방자치체는 300개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모가 가정에 있는 아동의 지방탁아시설에 대한 권리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그들의 권리가 반일로 제한되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비록 그 권리를 반일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총 탁아시설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 또한 부모의 장기 실업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탁아시설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일 탁아를 선택하는 부모의 경우, 지방자치체에 대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경기 후퇴기 동안 개방형 탁아시설(open day care), 클럽, 놀이시설(supervised play facilities)에 상당한 감축이 있었다. 전일 탁아에 대한 압력은 그러한 설비의 개발로 감소되었다.

탁아시설에 대한 요구는 머지않아 감소할 것이다. 인구학적인 예측치에 따르면 출산율의 감소로 취학 전 아동의 수가 향후 5년에 걸쳐 약 3만 4천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핀란드에서 태어난 아동의 수는 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보다 약 7천명 정도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보호시설에 관한 규정에는 취학아동의 오후 보호시설을 지방자치체가 제공할 의무는 없다. 최근 지방자치체는 취학 전 연령의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학아동을 위한 오후 보호시설을 폐쇄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 취학아동을 위한 오후 보호시설은 행정부문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조직(interested organization)간의 협조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 교회(church parish)와 자녀 복지를 위한 Mannerheim League는 취학아동을 위한 오후 보호시설의 제공을 증가했다.

2) 탁아시설요금의 변경(changes to daycare fees)

1997년 8월 1일 어린 자녀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 탁아시설 사용료(fee)의 결정을 위한 기초가 단일화되었다.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탁아시설 사용료는 가정의 규모와 소득을 기초로 결정되며, 그 사용료는 자녀 1인당 월 최고액은 1,000FIM, 최저액은 100FIM이다. 개정된 제도의 도입시 국가 전체의 총 탁아시설 사용료는 이전 제도하에서의 사용료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8년 기초자료에 따르면 탁아시설이 받은 금액은 약 13억 FIM이었고 탁아시설 사용료는 총지출의 약 15% 정도였다.

Stakes & SII의 어린 자녀의 탁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13%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이용 아동이 지급한 최고 사용료는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Helsinki에 있는 전일 탁아시설에 있는 아동의 45%와 Espoo에 있는 시설 61%가 최고 사용료를 지급한 집단에 속한다.

연간 3억 5천만 FIM의 이용료로부터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프로그램은 2000년도 초에 사회보장 및 보건 분야에서의 사용자 부담 비용의 조정을 포함하였다. 사용자부담 비용을 높이기 위한 요구는 또한 아동보호시설의 사용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탁아시설 사용료 최고액을 월 1,000FIM에서 1,100FIM으로 증가시킬 것과 더 나아가 연중 서비스를 사용한 아동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의 탁아시설 사용료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1년에 약 8천 500만 FIM의 탁아시설 사용료가 증가할 것이다. 그 중 8천만 FIM은 최고 사용료의 상한액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이다. 개정은 2000년 초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중·고 소득 가정의 탁아시설 사용료가 증가하게 되면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탁아시설 사용료는 최고 월 200FIM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조기교육 연구팀에 의한 아동탁아시설의 개선

조기교육에 관한 연구팀은 아동탁아시설에 관한 입법의 전반적 개정을 위한 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현행법이 현재의 요구와 실제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탁아시설은 조기에 교육에 참가할 아동의 권리와 자녀를 위해 탁아시설을 제공받을 부모의 권리가 결합된 서비스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탁아시설의 교육적 목표에 따른 탁아시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자녀와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탁아시설은 부모와 협조하여 자녀의 건강 증진을 촉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수에 있어서도 최대 한도가 있어야 하며, 그 한도는 아동들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교대 직원들(shiftworkers)의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에 충당할 법적인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아동을 위한 탁아시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동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 규모는 정상보다는 작아야 하고, 그리고 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와 교육을 요구하였다. 또한 연구팀은 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룹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며 아동을 지원하는 직원들의 능력 조건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아동을 위한 오후 보호시설 제공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4) 새로운 가정보육수당(home care allowance)제도

새로운 가정보육수당제도는 현재 2년간 시행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후 수혜자의 수나 아동의 수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다. 1999년 5월 말 현재 7만 3,300명의 가정보육수당 수혜자와 11만 6,500명의 아동이 수당의 지급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보육수당의 평균 금액은 개정 전 제도에 의한 것보다 약간 높다(2,157FIM/월). 이것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소득의 범위가 개정 전 제도에서의 소득관련 보조금보다 더 넓어졌기 때문이며 수혜자의 약 81%가 추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

5)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민간보육수당제도(private child care allowance)는 1997년 8월 1일에 도입된 제도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민간보육수당은 자녀를 위해 그들 자신의 탁아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부모들을 위해 지방 탁아시설에 선택권을 제공한다.

민간보육수당을 받는 아동의 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5월 말 민간보육수당이 적용되는 아동은 1만 4,200명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78%)은 3세 이상으로 약 50% 정도는 민간보육시설에 속하고 38%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속하고 있다. 민간자녀보육수당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1,600명의 아동이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 민간자녀보육수당의 평균 수준은 월 827FIM이며 민간탁아시설에 대한 평균 사용료는 월 2,103FIM이다. 민간자녀보육수당을 받은 아동의 약 29% 정도는 추가보육수당도 받고 있다.

부모들이 민간탁아시설에 사용료로써 지출한 비용은 지방 공공탁아시설에 지출한 것보다 많다. 일부 지방자치체는 특히 규모가 큰 지자체는 민간보육시설을 위해서도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보조금의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기구(Social Insurance Institution)의 통계에 따르면, 민간탁아시설에 있는 약 50%의 아동들이 지방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자녀복지에 대한 비용

1993년 정부보조금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의 사회보장 및 보건 서비스를 위한 보조금은 추정된 지출을 기초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일부 지방자치체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고비용 특별서비스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는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체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는 아동 1인의 복지 비용이 지방자치체의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회보장 및 보건 위원회(Social Affairs and Health Committee of Parliament)에 의한 입법안의 기초는 아동복지의 고비용을 재분배하기 위한 제도로써 1999년 예산안에서 승인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높은 아동복지 비용으로 인한 개별 지방자치체의 경제적 부담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1999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의 지방자치체 위원회 연합은 비용재분배제도 수행의 책임을 지고 있다. 지방자치체는 이 제도를 통해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에 의한 아동복지 정책으로 발생하는 연간 한 가정 당 150,000FIM을 초과하는 모든 비용의 70%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위해 social services에 의해 발생하는 총지출은 가정밖에 있는 아동 보호에 지출한 12억 FIM을 포함하여 연간 약 20억 FIM, 재분배 제도의 연간 총비용은 약 3억 3천 만 FIM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1/2은 특별목적할당액에 의해 충당된다.

7) 부모수당

아버지로서의 임무 수행과 근무시간표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상호 교환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여성위원회는 1999년 3월의 발표에서 현행법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직장인과 가정생활의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육아를 위한 부모수당의 지급기간을 25주로 확장하고 이 확장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요건을 규정함.
- ② 의회법에 의한 동거가정을 판례법(common law)의 결혼으로 확대한다. 확실한 경우에는 친권의 성립은 단순한 고지 절차로 가능하다. 부모는 결혼한 부모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합동 보호자이다.
- ③ 이혼한 아버지의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자녀양육비 관련법의 개정과 조정

또한 위원회는 가정 복지에 대한 관점에서 임신부 치료와 모자 치료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부부로서 부모

를 위한 더 많은 지원, 특히 아버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과 이러한 서비스에 있어서 적절한 재원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자녀를 둔 가정의 사회적 문제인 실업

실업은 자녀를 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많은 사회정책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 생활은 재정문제, 부모로서의 재정 지원의 결여, 기타 육체적·정신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실업, 건강상의 문제, 부모의 사회적 소외는 그들 자녀의 복지에 반영되고 있으며, 많은 아동들이 이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들(adolescents)이 열악한 고용상태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지역 내 탁아 및 보육 시설의 수는 증가하였다. 이것은 자녀를 입양하는 가정의 수가 1990 년대에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지방자치체가 고비용 정책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정책의 규모는 더 증가될 것이다. 아동을 보호하는 주요 이유는 부모의 학대, 정신적 질병 또는 자녀 무관심이다.

IV. 북구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의 국제비교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국가와 한계적(marginal) 복지국가로 구분되며 북구 국가들은 제도적 복지국가에 포함된다. 한계적인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수당(allowances) 또는 급여(benefits)를 매우 제한된 대상에게만 지급하며 지급하는 수당의 대부분이 자산조사에 의해 액수 및 대상의 범위가 결정된다. 제도적인 복지국가는 각종 수당 및 급여가 다양하게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전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제도적인 복지국가와 사회보험제도의 발달은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결과라는 주장과 산업화 및 근대화의 산물이라는 학설이 있다. 산업화와 근대화는 남성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여성은 가정주부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공적 또는 사회적 성격("social nature")이 강한 가족관련(family-related) 또는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수당이나 급여의 주요 지급대상인 반면 남성은 근로 및 임금과 연관된 수당(earnings-related allowances)의 주요 지급대상으로 대별되고 있다.

고용 또는 임금과 연관된 수당 및 급여의 목적은 개인의 근로기간 중의 소득과 병가, 실직 및 퇴직시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줌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환경 및 소득 수준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수당 및 급여에는 병가수당(sickness allowances), 부모수당(parental allowances), 실직수당(unemployment allowances), 부가연금급여(supplemental pension benefits) 등이 포함된다.

가족관련 및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수당 및 급여는 저소득층 또는 자녀를 둔 가정의 구매력을 제고함으로써 개인간의 경제적 환경 및 실질적인 순소득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수당 및 급여에는 자녀수당(child allowance),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별거 또는 이혼가정 자녀의 생활 및 생계수준 유지를 위한 자녀양육비의 선급제도(advance on maintenance allowance for children) 등이 포함된다.

북구의 여성 중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 경우는 부모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이로 인한 소득과 연관된 수당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독신여성 가장인 경우는 실업수당이 부모수당보다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자녀를 둔 남성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편부모 가장인 경우 각종 사회부조와 주택수당 등 수당의 많은 부분이 자산조사를 기초로 하는 공적부조에 의존하고 있다.

북구의 여성에게는 근로자, 가족의 부양자, 자녀 양육자 등 세 가지 역할이 주어짐에 따라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짧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남성보다 낮은 임금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가족관련 수당 및 자산조사관련 수당을 지급받으며 남성은 낮은 실업률과 보다 긴 시간의 노동을 공급하고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관련 및 임금과 연관된 수당 및 연금의 수혜 대상이 되고 있다.

북구 국가들간에는 가정과 자녀에 대한 총사회지출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다른 EU 회원국의 지출 형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IV-1>참조).

북구 국가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많은 독신 부모가 있다는 점이며 (<표 IV-2>참조) 모든 국가에서 독신 아버지보다 독신 어머니가 더

<표 IV-1> 총 사회지출 중 가족과 자녀에 대한 지출비중
(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1996년)

덴마크	12.4	오스트리아	11.0	이탈리아	3.6
핀란드	12.5	벨기에	8.0	룩셈부르크	13.2
아이슬란드	12.9	프랑스	8.7	네덜란드	4.4
노르웨이	13.8	독일	9.4	포르투갈	5.6
스웨덴	10.5	그리스	8.3	스페인	2.0
		아일랜드	12.8	영국	8.7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많다. 이렇듯 독신 부모가 많은 것은 가정 구조의 붕괴에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신 부모의 경우 양부모 가정보다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구 국가들의 경우 유럽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높으며 따라서 부모들의 근무시간 중에 자녀보호(child-minding option)에 대한 수요 또한 높다.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가 없는 가정의 가처분소득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처분소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핀란드에서 1명의 자녀를 둔 동거자 또는 부부는 자녀가 없는 동거자 또는 부부에 상당하는 가처분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신 부모와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모두 자녀의 수에 비례해 가처분소득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⁴⁾.

북구의 모든 국가에 있어서 사회급여와 세금은 독신과 부부간,

4) 핀란드의 독신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 IV-2〉 가족구성에 따른 가정의 분류(1997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¹⁾	노르웨이 ²⁾	스웨덴 ³⁾
0~17세 자녀 있는 가구(1,000) 구성비	644	630	39	570	1,137
- 부부	64	68	55	64	81(부부, 동거자 합)
- 동거자	18	14	22	14	
- 독신	18	18	22	22	19
자녀 없는 가구 (1,000) 구성비	2,226	2,096	106	1,482	2,410
- 부부	27	26	23	32	35(부부, 동거자 합)
- 동거자	7	7	3	..	
- 독신	65	67	74	68	65
자녀 있는 독신가구 (구성비)					
- 남성	12	12	7	11	21
- 여성	88	88	93	89	79
자녀 없는 독신가구					
- 남성	50	48	54	48	59
- 여성	50	52	46	53	41
가구당 평균 인원	1.8	1.9	2.9	2.1	2.1

주 : 1) 자녀 연령은 0~15세임.

2) 자녀 없는 동거자는 독신으로 분류하였음.

3) Statistics Sweden에서 조사한 노동인구에서 발췌한 수치임.
월별 약 17,000명을 추출하여 산출한 자료임.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표 IV-3> 독신, 부부, 동거자의 가처분소득과 20~44세의 PPP-Euro에 의한 가처분소득

(총가처분소득=100, 1996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신	부부	독신	부부	독신	부부	독신	부부	독신	부부
무자녀	103	112	101	105	102	172	102	114	102	116
1자녀	92	100	95	101	90	107	96	104	91	98
2자녀	75	96	99	97	83	93	88	93	93	97
PPP-Euro에 의한 총가처분소득 계	12,283	18,116	9,978	13,431	10,818	11,324	11,838	16,673	10,240	13,026

자료 : NOSOSCO, *Social Protection in the Nordic Countries 1997, 1999.*

자녀를 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 1인의 자녀를 둔 가정과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간의 소득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를 둔 부부에게 있어서 사회급여는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국가에 있어서 사회현금급여는 독신가정의 총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현금급여(social cash benefits)의 중요성에 관한 차이는 자녀를 둔 가정의 형태와 실업상태 등 두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로, 자녀를 둔 가정에게 지불되는 사회급여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특별급여 또는 수당이 독신부모에게 주어지며(스웨덴 제외) 자녀수당은 자녀의 수에 따라 증가한다. 두 번째로, 실업률이 일반적으로 양부모 동거가정보다 독신에게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독신과 부부간의 실업수당으로 인한 차이가 두드러지며, 20~44세 연령집단에서 독신은 일반적으로 부부보다 연령이 낮으며 동시에 독신 중에 학생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1. 가족과 자녀에 대한 현금급여(Cash Benefits to Families and Children)

가. 출산 및 입양관련 일별현금급여(daily cash benefits in connection with childbirth or adoption)

출산 및 입양 관련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모든 북구 국가들은 출산 전과 출산 후 정해진 기간중에 출산과 관련된 소득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보상이 주어진다. 모든 국가에 있어서 입양의 경우도 출산 시와 유사한 혜택이 주어진다.

모든 국가가(아이슬란드 제외) 출산과 관련된 급여를 과거의 소득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중에 종전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는다⁵⁾. 출산 전에 받는 출산급여는 산모만이 수혜자격이 있는 반면 모든 국가에서 출산 후에 받는 수당은 아버지에게도 해당된다. 덴마크에서는 출산수당을 받으려면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자영업자이거나 근로소득이 있거나 혹은 특별규정에 의한 실업수당 또는 질병수당을 받는 상태여야 한다. 다른 북구 국가의 경우 노동시장과 관련이 없는 부모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에서는 적은 금액만이 지급되고 노르웨이에서의 출산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된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아버지가 출산 후에 출산휴가를 택할 경우 일별현금급여(daily cash benefit)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동시에 산모도 출산급여를 받는다. 북구 국가들의 경우 출산 및 입양과 관련된 일별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

5) 아이슬란드에서 비공공부문 근로자는 그들의 소득 중 일부 고정된 금액을 받는데, 그 금액은 고용상태(전일고용 또는 시간제고용)에 따라 다르다.

<표 IV-4> 출산관련 소득대체 현금급여(1997년 12월)

(단위 : 주)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출산급여 지급 가능한 최대기간: 근로자	28	44(47)	26	42/52 ⁴⁾	약 64 ⁶⁾
-대상	18	18	4	9	4
· 어머니	2 ¹⁾	3	-	4	4
· 아버지	10	26	22 ³⁾	29/39	약 64 ⁶⁾
· 어머니 또는 아버지					
-기간					
· 출산 전	4 ²⁾	5~8	4	12	최대 9
· 출산 후	24	36~39	22 ³⁾	39/49	최대 64
과세여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출산급여 지급 가능한 최대기간: 비근로자	-	44(47)	26	없음	64
과세여부	.	과세	과세	비과세	과세
아버지가 공유할 수 있는 휴가기간	.	최대 26	×	× ⁵⁾	공유가능

주 : 1) 출산 후 첫 14주 내는 어머니와 동일함.

2) 임신에 어려움이 있거나 태아가 위험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공공부문 근로자와 일부 민간부문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출산 전 8주 동안 유급휴가 자격이 있음.

3) 기간은 어머니가 출산 전 4주 내에 쓸 수 있는 휴가를 쓰지 못한 것까지 연장할 수 있음.

4) 100% 유급인 42주 또는 80% 유급인 52주.

5) 어머니가 사망하면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주어짐.

6) 아버지는 출산과 관련하여 10일의 자격이 있고 이는 64주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대적으로 긴 편이다. 그러나 출산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보상수준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표 IV-5>참조).

<표 IV-5> 출산에 대한 현금급여 현황(1997년 12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취업자					
주당출산수당 (전기대비율)	100	70	..	100/80	75
주당 최소금액					
- 자국통화	-	360FIM	6,682ISK	618NOK	420SEK
- PPP-Euro	-	56	67	63	41
주당 최대금액					
- 자국통화	2,625DKK ¹⁾	-	15,362ISK ²⁾	4,904NOK	3,913SEK
- PPP-Euro	288	-		497	378
미취업자					
주당출산수당	-	360FIM	8,680ISK	비정기적 수당, 32,138NOK	420SEK

주 : 1) 공공부문 근로자와 일부 민간부문 근로자는 출산휴가 중 단체협약에 따라 전액 지급 받음. 일부 민간부문 근로자는 출산휴가 중 일부만 받음.
2) 공공부문 근로자와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출산휴가 중 전액 지급 받음.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모든 북구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편부모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소득 대체율 또는 보상률은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새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자녀수당 또는 지원금(child allowances payable)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은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소득을 대체 또는 보상하는 일별현금급여는 출산 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북구 국가들 중 일별 현금급여 수준이 핀란드에서 가장 낮고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V-5>참조). 핀란드의 경우 출산급여에 대한 소득상한 제한이 없는 반면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는 상대적으로 소득상한이 낮은 편이다.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한 휴가규정이 점차적으로 남성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표 IV-6>참조). 그러나 출산수당을 받는 수혜자수와 휴가일수는 국가간 차이가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보장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서로 상이하고 급여의 수혜자격이 주어지는 기간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IV-6> 임신, 출산, 입양에 따른 현금급여 수혜자(1990~1997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¹⁾	노르웨이	스웨덴
수혜자수					
남성					
1990	34,499	27,338	75	645	104,356
1995	41,003	40,267	10	25,166	130,786
1996	38,835	39,149	15	28,267	146,839
1997	39,138	39,806	13	30,003	133,948
여성					
1990	80,108	110,518	5,404	51,949	295,080
1995	90,335	108,429	5,066	76,088	327,846
1996	87,557	104,824	5,039	76,504	324,873
1997	85,652	101,990	4,943	77,015	299,841
휴가일수(1,000)					
1990	12,523	16,900	725	5,149	50,607
1995	14,385	16,947	688	10,699	52,212
1996	13,895	16,238	676	10,926	43,636
1997	13,867	15,981	663	11,043	37,905

주 : 1) 만일 어머니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다면 출산휴가 중 현금급여 수혜자격은 없어질 수 있음.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노르웨이는 남성의 일별현금급여(daily cash benefit)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1993년부터 남성에게 일별현금급여와 더불어 4주의 휴가가 주어지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1994년 이후 일별현금급여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인 시간계정('time-account')제도의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의 수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녀와 관련된 다른 지원부분에 더 많은 날짜에 해당하는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다른 국가들과 비교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부모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일별 현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1996년에 부모들의 일별 현금급여의 약 75%가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2년 동안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자녀 양육에 대한 현금급여(Cash Benefits to Parents when Minding Children)

가. 육아휴직제도(entitlement to leave of absence for child minding)

덴마크에서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육아(child-minding)를 위한 육아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997년에 부모에게 13주의 휴가제도가 있었고, 자녀가 1세 미만인 경우에는 26주의 휴가가 허용된다. 고용주와 합의하거나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람은 육아휴가 기간을 총 52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휴가제도(leave scheme)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육아휴가 기간중에 3세 미만의 자녀라면 공공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만일 3세와 8세 사이라면 시간제로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휴가기간중의 급여혜택은 1995년에 일별현금급여 최고액이 80%에서 70%로 감소하였고, 1997년에는 60%로 감소하였다. 지방정

부는 연간 35,000DKK(약 4,302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child-minding leave)을 택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1996년에 3만 1천명에서 1997년에 2만 2천명으로 감소하였고 1998년에는 2만명으로 더욱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부모 수의 감소는 해당 급여의 소득 대체율 또는 보상률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핀란드에서 부모는 부모의 일별현금급여를 받은 후에 지방탁아시설의 이용 또는 육아를 위한 수당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7년 8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자녀육아수당 혜택의 수급이 가능하다. 수당은 기초금액(basic)과 추가보조금(supplement)으로 구성되며 기초금액은 3세 미만 자녀 1인 당 월별 1,500FIM(231달러)이고 3세 미만의 추가금액은 월별 500FIM(77달러)이다. 취학 전 자녀의 경우 자녀수당은 월별 300FIM(46달러)이며 추가금액 1,000FIM(154달러)는 항상 1인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며 이는 가족의 소득에 포함된다. 1997년 말 자녀양육지원금은 11만 8,600명의 자녀를 위해 지급되었다. 만일 3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근무시간의 단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월별 375FIM(58달러)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이슬란드에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급여(benefit)제도가 없다.

노르웨이의 시간계정(time-account)제도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시 근로공급의 시간제 선택에 따라 차등적으로 근로임금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따라서 출산휴가 표준기간인 42주 또는 52주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출산급여의 일부가 근로소득과 연계·통합하여 지급될 수 있다. 월급의 80%를 받는 52주의 휴가는 최소 6주, 최대 39주간의 근무시간의 단축과 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월급의 전액을 받는 42주의 휴가는 6주에서 29주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무 기간은 50, 60, 75, 80, 90%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경우 근로소득에 추가되는 출산급여율(rate of

maternity benefit)은 50, 40, 25, 20, 10%가 된다. 1997년에 해당 여성의 2/3가 80%의 월급을 받는 휴가를 선택했으며 약 2만 9천명의 아버지는 4주 또는 4주 중 일부 일별현금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출산과 관련된 4주간의 휴가는 아버지들만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미사용시 이전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부모는 출산과 관련하여 64주 동안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자녀가 8세가 되거나 취학할 때까지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나. 질병이 있는 자녀의 육아(minding of sick children)

모든 북구 국가에서 부모는 질병이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스웨덴의 경우 법에 의해,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질병이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인 생계부양자(single provider)는 20일, 양부모는 각각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에서 단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는 경우 보수 전액이 지급되며, 노르웨이에서는 질병급여(sickness benefit)가 따로 지급된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근로소득의 75%가 지급 가능하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질병이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것과 관련된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3. 자녀수당(child allowance)

북구의 모든 국가에서 자녀수당은 모든 자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녀수당은 세금이 면제되고 액수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아이슬란드 제외). 덴마크에서 자녀수당은 자

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핀란드는 17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다면 16~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모든 국가의 자녀수당의 자금조달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한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에서는 자녀수당이 6세를 초과하는 자녀보다 0~6세 사이의 자녀에 있어서 더 높으며 덴마크에서의 경우 3~6세 자녀보다 0~2세 자녀에 대해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된다. 노르웨이에서는 1~3세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supplements)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사는 자녀를 위한 특별보조금도 마련되어 있다.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특별자녀수당(special child allowance)이 1인 생계부양자에게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지원금은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보다 1인 부모만 있는 편부모가정이 더 높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자녀 1인당 지원금이 증가될 계획이며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추가적인 자녀수당이 1인 생계부양자에게 주어진다. 스웨덴은 1998년부터 다수의 자녀에 대한 새로운 지원금이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게 지급된다. 덴마크에서 특별자녀수당은 부모 중 1인이 연금수혜자 또는 사망하였거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소득과 상관없이 범정보조금이 18세 미만의 2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편부모에게 지급된다. 만일 부모가 노령 또는 연금수급 예정자이면 자녀수당은 연금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며 이는 세금이 면제이고 기타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4. 생활유지를 위한 자녀양육비의 선지급제도(Advance on Maintenance Allowance for Children)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한 경우 자녀양육비를 공공기관에서 선지급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들의 생활지원금 성격의 생활유지수당(maintenance allowance)이 부모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며 이러

<표 IV-7> 자녀수당 연간금액(1997년 12월)

	덴마크 DKK ¹⁾	핀란드 FIM	아이슬란드 ISK ²⁾	노르웨이 NOK ³⁾	스웨덴 SEK
부부					
1자녀	9,400	6,420	39,448	11,112	7,680
2자녀	18,800	14,304	68,216	22,740	15,360
3자녀	28,200	23,652	155,271	35,832	25,440
1인 부모					
1자녀	17,400	8,820	176,166	22,740	7,680
2자녀	31,336	19,104	331,481	35,832	15,360
3자녀	45,272	30,852	496,946	49,572	25,440
자녀 1인당 평균지원금 (KR/FIM)	9,938	7,682	67,317	13,930	8,150
자녀 1인당 평균지원금 (PPP-Euro)	1,091	1,189	779	1,413	787

주 : 1) 1인 부모와 양부모 가정의 경우 모두 3~6세 자녀에 대한 분기별 일반 가족수당 2,350DKK인 가정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0~2세에 대한 수당은 분기별 2,625DKK, 7~17세는 1,775DKK임.

2) 아이슬란드에서 자녀수당(child allowance)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짐. 첫 번째는 0~15세의 모든 자녀에게 고정액으로 지급되고 0~6세의 자녀에게 추가로 30,176ISK가 지급됨. 두 번째는 소득에 따라 조정됨. 최고 금액은 부부 93,164ISK, 1인 부모 100,999ISK임. 표에서 나타난 수치는 7세 미만의 1자녀를 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3) 3~16세 자녀를 위한 자녀수당과 북부 노르웨이의 보조금(supplement)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음. 월별 657NOK의 추가지원금은 1~3세 자녀에 대한 자녀수당과 북부노르웨이의 월별 316NOK 보조금을 합한 금액임.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한 자녀양육비의 액수는 법적 판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한 금액 중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지불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모든 북구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이 자녀의 생활유지수당을 미리 지급하며 이를 차후에 징수한다. 선급생활유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제한은 18세이나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은 자녀가 교육을 받는 중이라면 20세까지 연장된다.

모든 국가에서 선급생활유지비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지불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비 또는 생활유지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최소금액과의 차액을 공공기관이 지급한다. 노르웨이는 선급생활유지지원금을 받는 자녀의 수가 전체 지원금(allowance)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선급생활유지지원금 지불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거나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때만 지급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표 IV-8> 선급생활유지수당 규모(1997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자녀 1인당 연간 최고금액					
- KR/FIM	8,700	7,682	137,950	12,600	14,076
- PPP-Euro	955	1,189	1,597	1,278	1,359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표 IV-9> 18세 미만 인구 중 선급생활유지수당 수취
자녀의 비율(1990~1997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990	14	7	16	12	15
1995	15	10	17	15	16
1996	15	10	18	11	16
1997	15	11	19	12	16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5. 기타 지원제도

노르웨이는 일반 자녀수당과 더불어 자녀와 관련된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별거 또는 이혼한 1인 생계부양자에게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정착수당(transition allowance)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자녀연금(child pension)은 기초연금과 보조연금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덴마크에서는 특별자녀수당이 제공된다. 고아연금(child pension)은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지급된다.

6. 가정과 자녀에 대한 서비스(Services to Families and Children)

북구 국가에서는 광범위한 서비스가 가정과 자녀에게 제공되며 이러한 서비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탁아시설, 취학 전 학습, 가정보육시설(family day care),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자녀와 청소년을 위한 안전제도를 제공하는 지방자

치단체에 있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도 가능한 한 일반 보호제도 내에서 보살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북구 국가에서 특별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자녀를 가진 가정을 위한 지원제도로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질병, 출산 등으로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적용된다.

가. 취학 전 자녀를 위한 보육기관(day care institution)

취학 전 연령의 자녀는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북구국가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전일제와 시간제로 운영하는데 별도의 전일제 기관과 시간제 기관이 존재하기도 한다. 모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충분한 기관 및 시설을 가져야 한다.

덴마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68%가 1997년에 0~9세의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을 보장하며 또한 1~5세의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5%, 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8% 보장하고 있다. 1996년 이후 핀란드에서 7세 이하의 모든 자녀는 199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탁아시설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공공시설 대신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고 대신 수당 및 지원금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997년 8월 1일 이후 핀란드의 부모는 지방보조금(municipal subsidies)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자녀를 돌보는 공공 및 민간 시설에 직접 납부하며 보조금은 기초금액 700FIM(108달러)과 추가보조금 800FIM(123달러)으로 구성된다. 보조금은 부모의 소득에 포함되며 1997년 말 민간보호시설에 9,700명의 자녀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아이슬란드는 모든 3~5세 자녀의 88%와 0~5세 자녀의 64%가 공

공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한다. 노르웨이에서는 0~5세 자녀의 51%가 유치원(kindergarten)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스웨덴에서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업중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특별 지원금이 필요한 자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허용되는 여러 가지 제도로 대체될 수 있다.

1) 보육기관

모든 북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주로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는 보육시설에 대해 일부 또는 소득에 비례하는 보육료를 지불한다. 모든 국가에 민간보육시설(private day care)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없이 부모들로부터의 보육료로 운영된다.

2) 취학 전 학습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에는 취학 전의 어린 자녀를 위한 특별수업이 마련되어 있다. 덴마크에서 지방정부는 취학 전 자녀에게 최소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총 자녀의 98%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방과 이후 자녀들은 보육시설(day care institution)이나 방과 후 모임(after-school club schemes)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핀란드에서 이 제도는 의무적이지 않으나 해당 자녀의 약 50%가 참가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6세인 모든 자녀가 참가해야 하나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는 취학연령이 6세이고 그들의 연령에 맞는 교육이 제공된다. 스웨덴은 취학 전 자녀를 위한 특별한 제도가 없으나 취학연령은 신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모든 6세의 아동은 유치원에서 525시간 수업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었으나 1998년부터 이 권리는 취학 전 수업에서 525시간 수업을 받을 권리로 대체되었다.

3) 취학연령의 자녀

모든 국가에서 취학연령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이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club schemes)에 대한 책임이 학교에 있으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다. 청소년 센터(youth center) 및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은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의 일부 지방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연령이 10세인 반면 다른 지역은 14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핀란드는 일반적으로 연령제한이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10세 이하에 한해서만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아이슬란드는 9세, 노르웨이는 10세, 스웨덴은 12세 이하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탁아 및 보육시설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녀의 수는 국가간 차이가 있으며 그 이유는 실업의 범위와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덴마크에서는 취학 전 수업이 끝난 후에 보육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녀가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0~2세의 탁아시설을 이용하는 수치가 낮은 것은 가정에서의 보육을 위한 수당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스웨덴에서는 장기 출산휴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탁아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V-10> 일반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등록된
자녀의 수(1990~1997년)**

(단위 : 천명)

	덴마크	핀란드 ¹⁾	아이슬란드 ²⁾	노르웨이 ³⁾	스웨덴
1990					
0~2세	88	55	3	19	103
3~6세	161	141	10	120	263
0~6세, 계	248	196	13	139	367
7~10세	74	17	1	..	146
0~10세, 계	322	213	13	..	512
1995					
0~2세	101	34	5	39	123
3~6세	218	145	12	149	367
0~6세, 계	319	179	17	188	490
7~10세	123	11	-	..	198
0~10세, 계	441	190	17	..	688
1996					
0~2세	107	41	5	42	124
3~6세	231	165	12	150	408
0~6세, 계	338	206	17	192	532
7~10세	135	11	-	..	209
0~10세, 계	474	217	17	..	741
1997					
0~2세	114	45	5	50	118
3~6세	244	175	12	134	404
0~6세, 계	358	220	17	184	522
7~10세	152	10	-	..	223
0~10세, 계	511	230	17	..	745

주 : 1) 1995년과 1996년 사이의 수치는 공공지원금을 받는 민간 탁아시설에 있는 자녀 포함.

2) 1995년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에 포함되던 0~5세의 자녀가 1995년에 완전히 학교부문으로 이전됨(통계수치는 불가능함).

3) 1997년부터 0~5세 자녀만 해당됨.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표 IV-11> 탁아시설과 보육기관에 등록된 자녀의 연령별 비중(1990~1997년)

	덴마크	핀란드 ¹⁾	아이슬란드 ²⁾	노르웨이 ³⁾	스웨덴
1990					
0~2세	48	31	24	11	29
3~6세	73	58	60	57	64
0~6세, 계	61	44	43	33	48
7~10세	34	7	3	..	38
0~10세, 계	52	30	28	..	44
1995					
0~2세	48	18	37	22	37
3~6세	83	55	64	61	74
0~6세, 계	68	39	53	44	59
7~10세	53	5	-	..	45
0~10세, 계	63	27	35	..	54
1996					
0~2세	51	22	37	23	40
3~6세	86	63	64	61	83
0~6세, 계	71	46	53	45	66
7~10세	56	4	-	..	46
0~10세, 계	66	31	34	..	59
1997					
0~2세	55	25	39	28	41
3~6세	89	67	66	73	84
0~6세, 계	74	49	55	50	68
7~10세	61	4	-	..	68
0~10세, 계	70	33	35	..	60

주 : 1) 1995년부터 1996년간의 수치는 공공지원금을 받는 민간 탁아시설의 자녀 포함.

2) 1995년부터 0~5세의 자녀만 포함.

3) 1997년부터 0~5세 자녀만 포함.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7. 현금급여와 가족과 자녀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및 재원조달

북구 국가에서 가족과 자녀에게 지출한 것을 1인당 PPP로 계산한 금액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출 면에서 덴마크가 가장 높고 아이슬란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현금급여가 적은 것은 공공기관이 출산과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되며 그것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더 구체적인 수치가 개인의 급여(benefit) 분야에서 분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출산, 입양에 따른 일별현금급여로의 지출이 크고 휴가기간도 긴 편이며 아이슬란드는 출산시 급여의 금액이 큰 편이다. 핀란드와 덴마크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크며 덴마크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핀란드에는 가정에서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있으며 스웨덴은 다소 적은 금액이 일시적이거나 부모수당으로 지급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지출이 별도로 있으며 이 제도의 목적은 1인 생계부양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재정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지원금이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녀수당에 대한 재정지출은 노르웨이가 가장 높고 스웨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V-7>참조). 다른 현금급여에 대한 지출은 주로 공공기관의 생활유지를 위한 보조금(maintenance allowance)의 선지급금이고 이 분야의 지출이 스웨덴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노르웨이는 정착수당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독신, 이혼한 자, 법적 별거인 자에 대한 학비보조금을 주며 이러한 급여는 다른 국가에는 없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덴마크가 가장 우수하며 아이슬란드가 가장 열악한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는 탁아시설과 주거시설(residential institution)에 대한 지출과 예방차원의 정책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으로는 스웨덴이 해당된다.

덴마크에서 자녀를 위한 육아휴가에 대한 지출은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감소하였으며 이는 휴직급여(leave benefit)가 일별 현금급여 최고액의 70%에서 60%로 하락하여 휴가를 가는 부모의 수가 3만 1천명에서 2만 2천명으로 감소한 데 기인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있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등록된 어린이의 수가 약 3만 5천명 증가한 결과 일일 프로그램 관련 지출은 증가하였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지출한 것은 1996년에 약 20억 DKK에서 1997년에 약 21억 DKK로 증가한 북구 국가들의 지출 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핀란드는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이 증가했으며 동시에 현금급여는 신생아가 1,400명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아이슬란드는 가족 및 자녀에 대한 현금급여가 1995년 이후 거의 동일한 상태이나 1996년에서 1997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것은 지원금액이 소득과 관련이 있고 그 기간 중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녀를 위한 지원금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가족과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에 의한 지출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보육시설에 대한 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노르웨이에서는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관련 지출이 4% 증가했으며 현금급여에 대한 지출이 서비스에 대한 지출보다 더 증가하였다. 비록 출산은 전년과 비교하여 약 1,200명이 감소하였으나 출산 및 입양과 관련된 현금급여 지출은 6.7% 증가했으며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IV-12> 현금급여와 가족 및 자녀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및 재원조달(1997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¹⁾	스웨덴
<i>현금급여, 백만 KR/FIM</i>					
A. 출산 및 입양에 따른 일별현금급여	4,623	2,874	673	6,097	10,642
B. 출산보조금(Birth grants)	-	56	612	570	20
C. 부모의 휴가	1,867	2,076	-	480	2,640
D.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11,162	8,384	4,813	12,835	14,456
E. 부가보조금(Supplements)	-	-	-	-	-
F. 기타	15	484	547	3,075	3,023
a. 자녀에 대한 생계유지비 선급분	15	484	547	482	3,023
현금급여 계	17,667	13,874	6,644	23,057	30,781
<i>서비스, 백만 KR/FIM</i>					
A. 탁아소	17,678	6,929	3,730	9,092	26,842
B. 숙박시설(Accommodation)	4,868	729	784	1,095	5,117
C. 파견 도우미	197	185	32	-	-
D. 기타	1,259	1,091	650	4,157	4,356
서비스 계	24,002	8,934	5,197	14,344	36,315
지출 계	41,669	22,808	11,841	37,401	67,096
백만 KR/FIM GDP비중	3.7	3.6	2.2	3.4	3.8
<i>재원조달 (%)</i>					
- 공공기관	85.5	87.9	93.0	80.7	74.3
- 고용주	0.3	4.6	7.0	11.0	11.5
- 사회보험가입자(분담금과 특별세)	14.2	7.5	-	8.3	14.3
<i>1995~1996변경(1996 가격 기준)</i>					
- 백만 KR/FIM	429	81	228	510	2,849
- %	1.0	0.4	1.9	1.4	4.2

주 : 1) 탁아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출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지출한 1,335백만 NOK가 포함되었음.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표 IV-13> 가족 및 자녀를 위한 현금급여 및 서비스,
PPP/1인당(1997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현금급여	367	418	284	531	336
서비스	498	569	222	330	396
계	865	687	506	861	732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스웨덴은 자녀 수의 감소가 부모에 대한 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나 현금급여에 대한 지출은 어린이 복지제도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모든 북구 국가에서 탁아시설 또는 보육기관 비용의 일부는 부모가 부담하며 비용 계산시 가족 소득이 고려되고 형제 또는 자매의 수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1인 생계부양자와 학생만이 감소된 비율로 보육료를 지불한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당히 소득이 낮은 부모를 둔 자녀에게 무료혜택을 주고 있다. 덴마크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총비용이 지방 탁아시설 운영비의 거의 23%이며 핀란드는 사용자 부담이 총비용의 약 15%에 해당한다. 아이슬란드는 사용자가 탁아비용의 약 24.3%와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의 33.9%를 부담한다. 노르웨이는 민간유치원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총비용의 46.4%이고 지방자치단체유치원의 경우는 29.2%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 제도는 대부분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초로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담액이 조정된다. 스웨덴은 사용자 부담비용이 총 운영비용의 약 15% 수준이다.

8. 인구와 소득분배

가. 인구

북구 국가들간의 인구 구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몇 년의 불경기 이후 출생률은 다시 증가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출생률이 다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구 국가간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나 유아수의 증가는 탁아시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유아수의 증가 이외에도 보호와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도 증가하였다. 북구의 모든 국가들의 노령층은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으며 노년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구 국가들 중 스웨덴의 노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북구와 유럽의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EU 회원국의 젊은 층에 대한 인구증가의 평균 수치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노령인구, 특히 여성노령인구의 증가 추세는 EU 회원국 내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나. 소득분배

몇몇 연구에 의하면 북구 국가가 OECD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소득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간의 소득분배가 북구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다른 북구 국가에 비해 최상위인 1분위가 총가구소득에서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신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덴마크의 경우 1분위에서 가장 높고 핀란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하위인 4분위에서도 덴마크가 가장 높고 핀란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4> 성별·연령별 평균 인구(1997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남성										
0~6	247	9	229	9	16	12	219	10	403	9
7~17	326	12	364	15	24	18	308	14	603	14
18~24	249	10	227	9	15	11	206	10	387	9
25~49	992	38	972	39	50	37	826	37	1,557	36
50~64	469	18	432	17	17	13	332	15	769	18
65~79	260	10	235	9	11	8	227	10	505	12
80~	68	3	46	2	3	2	60	3	148	3
계	2,610	100	2,505	100	136	100	2,179	100	4,371	100
여성										
0~6	234	9	220	8	15	11	207	9	383	9
7~17	311	12	348	13	23	17	293	13	572	13
18~24	241	9	217	8	14	11	199	9	371	8
25~49	953	36	937	36	49	36	791	36	1,495	33
50~64	470	18	446	17	17	13	331	15	764	17
65~79	326	12	345	13	13	9	283	13	614	14
80~	138	5	122	5	4	3	122	6	276	6
계	2,674	100	2,653	100	135	100	2,227	100	4,475	100
총인구										
0~6	480	9	449	9	31	12	426	10	786	9
7~17	637	12	712	14	47	18	600	14	1,175	13
18~24	490	9	445	9	29	11	405	9	758	9
25~49	1,954	37	1,909	37	98	36	1,617	37	3,052	35
50~64	939	18	878	17	34	13	663	15	1,533	17
65~79	587	11	580	11	24	9	510	12	1,119	13
80~	206	4	167	3	7	3	182	4	424	5
계	5,284	100	5,140	100	271	100	4,405	100	8,846	100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부부의 경우 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덴마크가 가장 높고 아이슬란드가 가장 낮으며 4분위 또한 덴마크가 가장 높고 핀란드가 가장 낮다.

총소득에서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아이슬란드에서 독신의 경우 제외) 가장 낮은 가처분소득을 가진 가구가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가처분소득을 가진 가구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보장급여는 다시 말하면 소득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지출인 것이다. 낮은 분위에 있는 독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낮은 분위에 속하는 자가 사회보장급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또한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독신과 자녀가 있는 부부의 4분위에서 사회급여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덴마크에서는 독신이 크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현금사회보장급여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신이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 총소득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총소득에서의 세금비중은 모든 국가의 경우 낮은 가처분소득을 가진 가구가 가장 낮고 높은 가처분소득을 가진 가구가 가장 높다. 결과적으로 조세체계는 소득수준의 차이를 제거하는 데 기여한다. 총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덴마크가 다른 국가에 비해 확실히 높으며 이것은 다른 북구 국가에서 공공급여의 자급에 있어서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social contributions)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V. 북구 각국의 사회보장지출 및 관련 조세 제도

1. 사회급여에 대한 과세

현금급여는 유형에 따라 면세 혹은 과세대상이다. 북구 국가의 수급자의 관점에서는 과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급여가 비과세나 과세대상이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총 현금급여액 중 과세대상

<표 V-1> 과세/비과세 현금급여의 GDP비중(1995~1997년)

	비과세현금급여		과세현금급여	
	백만 KR/FIM	GDP비중	백만 KR/FIM	GDP비중
1995				
덴마크	18,764	1.9	188,292	18.7
핀란드	15,965	2.8	106,889	19.0
아이슬란드	6,574	1.5	37,653	8.3
노르웨이	20,204	2.2	126,225	13.6
스웨덴	32,457	2.0	323,257	19.7
1996				
덴마크	19,703	1.8	191,099	17.9
핀란드	16,012	2.7	108,496	18.5
아이슬란드	6,651	1.4	39,063	8.1
노르웨이	19,868	2.0	132,978	13.1
스웨덴	31,199	1.9	318,368	19.1
1997				
덴마크	21,113	1.9	190,024	17.0
핀란드	16,151	2.6	108,110	17.2
아이슬란드	6,351	1.2	42,266	8.0
노르웨이	20,538	1.9	138,898	12.8
스웨덴	20,055	1.1	334,884	19.0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현금급여의 비율은 다섯 나라 모두 지난 몇 년간 증가하고 있으나 (<표 V-1>참조) 국가들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큰 비과세 현금급여액은 가족과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표 V-2>참조). 사회급여 또는 지원금에 대해 덴마크와 아일랜드에서는 과세대상인 반면 다른 북구 국가들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항목이 많다. 북구 국가들에서 과세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표 V-2> 현금급여에 대한 세제

	사회보장지출 백만KR/FIM	현금급여 백만KR/FIM	현금급여중 비과 세급여의 비중	현금급여중 과 세급여의 비중
	1	2	3	4
<i>덴마크</i>				
I. 가족과 자녀	41,669	17,667	63	37
II. 실업	41,636	39,229	-	100
III. 질병	62,358	11,601	-	100
IV. 노령자	126,204	105,596	2	98
V. 장애인	36,736	25,396	23	77
VI. 유족	188	1	100	-
VII. 주택	8,086	-	-	-
VIII. 기타 사회보장	13,250	11,647	12	88
IX. 관리비	9,068	-	-	-
계 I.-IX.	339,194	211,137	10	90
<i>핀란드</i>				
I. 가족과 자녀	22,808	13,874	61	39
II. 실업	24,143	22,111	1	99
III. 질병	39,695	1,493	0	100
IV. 노령자	54,081	48,771	5	95
V. 장애인	26,554	21,648	7	93
VI. 유족	7,182	7,152	3	97
VII. 주택	2,169	0	-	-
VIII. 기타 사회보장	4,443	3,213	96	4
IX. 관리비	4,959	-	-	-
계 I.-IX.	186,034	124,261	13	87

(<표 V-2 계속> 다음 장에 계속 →)

<i>아이슬란드</i>				
I. 가족과 자녀	11,841	6,644	78	22
II. 실업	3,053	2,911	5	95
III. 질병	35,801	7,173	-	100
IV. 노령자	26,683	19,473	-	100
V. 장애인	11,285	7,837	8	92
VI. 유족	2,774	2,774	6	94
VII. 주택	534	534	37	63
VIII. 기타 사회보장	2,420	1,271	-	100
IX. 관리비	1,704	-	-	-
계 I.-IX.	96,094	46,617	13	87
<i>노르웨이</i>				
I. 가족과 자녀	37,401	23,057	60	40
II. 실업	11,829	7,443	-	100
III. 질병	79,621	26,610	0	99
IV. 노령자	84,444	60,478	0	100
V. 장애인	46,946	33,938	7	93
VI. 유족	3,972	3,763	0	100
VII. 주택	1,824	-	-	-
VIII. 기타 사회보장	7,399	4,135	95	5
IX. 관리비	5,174	-	-	-
계 I.-IX.	279,152	159,436	13	87
<i>스웨덴</i>				
I. 가족과 자녀	67,096	30,781	62	38
II. 실업	56,603	52,733	0	100
III. 질병	135,002	23,867	0	100
IV. 노령자	224,720	174,506	0	100
V. 장애인	70,645	46,374	2	100
VI. 유족	14,005	14,005	0	100
VII. 주택	15,903	-	-	-
VIII. 기타 사회보장	19,095	12,673	-	100
IX. 관리비	11,950	-	-	-
계 I.-IX.	614,920	354,939	6	94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2. 사회보장지출

본절에서는 북구의 사회보장지출(social expenditure)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V-3>은 북구 국가들과 EU 국가들에 있어서 GDP 대비 사회부문에 대한 지출의 비중을, <표 V-4>는 PPP-Euro로 환산한 1인당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액을 기능별로 나타내고 있다⁶⁾.

**<표 V-3>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에서
사회지출의 GDP비중(1996년)**

덴마크	33.6	오스트리아	29.5	이탈리아	24.8
핀란드	32.1	벨기에	30.0	룩셈부르크	26.2
아이슬란드	18.7	프랑스	30.8	네덜란드	30.9
노르웨이	26.1	독일	30.5	포르투갈	21.6
스웨덴	34.8	그리스	23.3	스페인	22.4
		아일랜드	18.9	영국	27.7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사회보장지출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사회보장지출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는 총사회보장지출액의 재원조달(financing)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사회보장지출의 목적에 대한 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사회보장지출과 관련한 과세의 유의성을 정리하였다.

6) 단, EUROSTAT는 ESA95/SNA93의 체계를 도입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조정된(adjusted) GDP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표 V-4>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1인당
사회지출(1996년, PPP-Euro환산치)**

	가족과 자녀	실업	질병	노령자, 장애자, survivors	주택	기타 사회보장	계
덴마크	832	924	1,189	3,321	161	273	6,699
핀란드	638	711	1,092	2,478	65	120	5,104
아이슬란드	462	131	1,354	1,519	18	96	3,580
노르웨이	740	304	1,056	2,618	43	155	5,366
스웨덴	635	619	1,326	3,069	191	189	6,030
오스트리아	643	336	1,479	3,314	18	70	5,860
벨기에	454	824	1,472	2,812	·	134	5,695
프랑스	463	428	1,540	2,636	162	91	5,321
독일	573	587	1,819	2,964	37	138	6,118
그리스	215	111	679	1,489	61	28	2,584
아일랜드	376	491	1,008	907	97	59	2,939
이탈리아	160	87	959	3,250	1	1	4,458
룩셈부르크	1,053	279	2,034	4,497	12	101	7,977
네덜란드	248	681	1,601	3,044	65	23	5,662
포르투갈	127	131	746	1,242	1	14	2,260
스페인	61	448	897	1,636	16	24	3,082
영국	407	271	1,185	2,439	334	31	4,668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가. 사회보장지출추이

(social expenditure trends, 1990~1997)

<표 V-5>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총사회보장지출과 1인당
사회보장지출의 추이를 경상가격, 불변가격, GDP 대비 비중 그리고
PPP-Euro로 나타내고 있다.

<표 V-5> 사회보장 총액 및 1인당 지출액(1990~1997년)

	사회보장지출		거주자 1인당 사회보장지출		15~64세 거주자 1인당 사회보장지출	
	명목가격 백만 KR/FIM	실질가격 (1997기준) 백만 KR/FIM	명목가격 KR/FIM	실질가격 (1997기준) KR/FIM	명목가격 KR/FIM	실질가격 (1997기준) KR/FIM
<i>덴마크</i>						
1990	237,207	273,025	46,150	53,119	68,502	78,846
1995	325,634	339,804	62,288	64,999	92,442	96,444
1996	333,570	340,976	63,380	64,787	94,202	96,294
1997	339,195	339,195	64,180	64,180	95,596	95,596
<i>핀란드</i>						
1990	131,369	149,761	26,345	30,033	39,146	44,626
1995	179,564	182,771	35,155	35,783	52,662	53,602
1996	185,272	187,576	36,154	36,604	54,226	54,900
1997	186,033	186,033	36,194	36,194	54,284	54,284
<i>아이슬란드</i>						
1990	62,290	77,115	244,478	302,664	379,572	469,910
1995	85,984	89,452	321,580	334,551	499,834	519,995
1996	90,345	91,904	335,855	341,650	519,224	528,183
1997	96,094	96,094	354,590	354,590	612,064	612,064
<i>노르웨이</i>						
1990	190,406	222,394	44,892	52,433	69,334	80,981
1995	253,620	263,511	58,181	60,599	90,091	93,823
1996	266,134	273,053	60,747	62,322	94,074	96,533
1997	279,152	279,152	63,369	63,369	98,147	98,147
<i>스웨덴</i>						
1990	470,013	582,816	54,916	56,936	85,552	106,084
1995	588,689	594,926	66,692	67,399	104,726	105,835
1996	590,248	593,599	66,763	67,142	104,765	105,360
1997	602,970	602,970	68,163	68,163	106,815	106,815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표 V-6> 사회보장지출과 GDP의 관계(1990~1997년¹⁾)

	GDP, 백만 KR/FIM	사회보장지출의 GDP 비중	사회보장지출의 GDP 비중 지수 (1990=100)
<i>덴마크</i>			
1990	825,310	28.7	100
1995	1,008,760	32.3	112
1996	1,065,034	31.3	109
1997	1,117,824	30.3	106
<i>핀란드</i>			
1990	521,349	25.2	100
1995	561,175	32.0	127
1996	587,437	31.5	125
1997	630,245	29.5	117
<i>아이슬란드</i>			
1990	364,401	17.1	100
1995	451,547	19.0	111
1996	485,168	18.6	109
1997	529,949	18.1	106
<i>노르웨이</i>			
1990	722,705	26.4	100
1995	928,745	27.3	103
1996	1,016,587	26.1	99
1997	1,089,032	25.6	97
<i>스웨덴</i>			
1990	1,359,879	34.6	100
1995	1,644,983	35.8	103
1996	1,677,833	35.2	102
1997	1,758,192	34.3	99

주 : 1) 스웨덴의 1997년 GDP 개정되었음.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표 V-7> 1인당 사회보장지출(1990~1997년, 1997년
기준으로 PPP-Euro로 환산)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990	5,830	4,650	3,503	5,318	5,496
1995	7,135	5,540	3,873	6,146	6,506
1996	7,112	5,667	3,955	6,321	6,481
1997	7,045	5,603	4,105	6,427	6,579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나.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조달

(financing of social expenditure)

북구 통계치에 나타나 있는 사회보장지출액의 재원조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기금에 지불한 현재의 분담금(current contribution)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급여를 통한 직접적인 재원조달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자와 다른 자본이득들이 이 사회보장지출액 통계치에 포함되어 있다. 이자와 자본이득은 주로 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1) 재원별 현재의 분담금의 배분

북구 통계치에서는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재원조달의 현재 분담금은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분담금과 특별세뿐만 아니라 개인의 급여 특히 공공기관들, 고용주들이 분담하고 있는 재원별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보장지출액은 순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 등 그리고 사용자가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는 요금(charges)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조달에 대한 현재 분담금의 배분은 <표 V-8>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V-8> 중앙정부, 지방정부, 고용주, 가입자별 사회 보장지출 재원의 비중(1990~1997년)

	공공기관	고용주	가입자 (분담금, 사회보장세)	기타	계
<i>덴마크</i>					
1990	80	8	5	7	100
1995	71	9	14	6	100
1996	69	10	15	6	100
1997	68	8	18	6	100
<i>핀란드</i>					
1990	41	44	8	7	100
1995	46	33	14	7	100
1996	45	35	13	7	100
1997	45	35	13	7	100
<i>아이슬란드</i>					
1990	67	26	7	-	100
1995	61	31	8	-	100
1996	60	32	9	-	100
1997	57	35	8	-	100
<i>노르웨이</i>					
1990	63	24	13	-	100
1995	62	22	15	-	100
1996	62	24	14	-	100
1997	61	24	15	-	100
<i>스웨덴</i>					
1990	100
1995	48	38	5	8	100
1996	45	40	7	8	100
1997	48	39	7	6	100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구(local and county authorities)에 이전되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과 정부상환금(government reimbursement)

모든 북구 국가들에서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서비스와 각종 급여혜택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들과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 서비스와 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포괄보조금 혹은 상환금을 받는다. 포괄보조금은 일반적인 보조금으로서 주어지거나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그 목적이 정해져 지급된다. 포괄보조금은 주민의 수, 그들의 연령분포에 근거하여 계산되거나 혹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원에 따라 계산된다.

정부의 상환금은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일정 비율로 혹은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정부보상금은 지출과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포함한 다른 분담금의 차액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덴마크의 경우 지방당국은 사회급여의 주된 부분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그들 급여혜택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 비용은 바로 중앙정부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전액 보상된다. 다른 북구 국가들에서는 사회급여는 주로 정부 혹은 다른 중앙 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모든 북구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서비스의 대다수가 지방정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들은 우선 비용을 지불하고 바로 중앙정부로부터 포괄보조금을 받는다.

라. 연금을 위한 기금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인 분담금은 보통 그 해에 지급되는 현재의 지출에 사용되지만 특히 연금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또한 기금을 설

정하기 위하여 쓰여진다.

<표 V-9> 연금을 위한 기금(1990~1997년), 1997년 기준

(단위 : 10억 KR/FIM)

	기초연금	보조연금	추가연금
<i>기금총액</i>			
<i>덴마크</i>			
1990년 초	-	80.6	119.0
1990년 말	-	86.4	128.6
1997년 초	-	147.7	196.0
1997년 말	-	170.2	218.7
<i>핀란드¹⁾</i>			
1990년 초	0.8	114.8	37.5
1990년 말	0.7	137.4	41.5
1997년 초	1.6	235.1	34.2
1997년 말	1.5	257.7	34.5
<i>아이슬란드</i>			
1990년 초	0.1	126.4	-
1990년 말	0.1	154.9	-
1997년 초	-	306.5	-
1997년 말	-	352.7	-
<i>스웨덴</i>			
1990년 초	9.5	516.6	224.8
1990년 말	11.2	523.0	244.9
1997년 초	5.4	607.2	427.5
1997년 말	6.3	619.8	485.6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점차적으로 이득을 발생시키는 기금의 목적은 미래의 지출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premium reserve system). 기금의 설립은 또한 시간에 걸쳐 들어오고 나가는 지출의 변동수준에 대한 완충

(buffer)지를 만들기 위하여 배분방식에서 발생한다(이 경우 비용이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의 분담금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부가연금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은 현재 공공예산(public budget)에 의하여 조달되고 있으며 이 지출은 결국 <표 V-7>에서 빠져 있다. 사회보장기금은 독립적이고 공적인 기금이어서 사회안전서비스의 운영비용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는다.

마. 사회보장지출의 유형과 목적(social expenditure by type and purpose)

사회보장지출은 현금급여와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현금급여는 소득의 손실의 사항에 대한 보상과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현금급여로 나뉜다. 목적에 따라 급여를 배분함으로써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혹은 제거해야 할 위험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이 나누어 진다.

각국에서는 급여의 목적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을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규와 social pattern의 변화들은 이 배분을 변하게 하고 있다. 나라들을 비교하여 보면 목적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을 배분하는 데 몇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차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다양한 목적을 위한 혜택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표 V-10> 주요그룹별 사회보장지출비중(1995~1997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i>1995¹⁾</i>					
가족 및 자녀	12.4	13.4	12.9	14.1	11.4
실업	14.7	14.4	4.4	6.7	11.1
질병	17.8	20.9	37.9	26.3	21.7
노령자	36.5	28.9	27.2	31.2	34.3
장애자	10.3	15.0	11.6	14.7	12.1
Survivors	0.1	3.8	2.8	1.5	2.4
주택	2.4	1.5	0.4	0.7	3.4
기타 사회보장급여	4.4	2.1	2.8	3.8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i>1996</i>					
가족 및 자녀	12.4	12.5	12.5	13.8	10.5
실업	13.8	14.0	3.2	5.7	10.3
질병	18.4	21.4	37.9	28.1	22.0
노령자	37.8	29.9	27.8	30.3	36.4
장애자	11.0	14.7	11.7	16.9	12.0
Survivors	0.1	3.9	2.9	1.5	2.5
주택	2.4	1.3	0.8	0.8	3.2
기타 사회보장급여	4.1	2.3	2.7	2.9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i>1997</i>					
가족 및 자녀	12.6	13.3	12.5	13.4	11.1
실업	12.6	12.6	3.2	4.3	9.4
질병	18.9	21.9	37.9	29.1	22.4
노령자	38.2	29.9	28.3	30.8	37.3
장애자	11.1	14.7	12.0	17.2	11.7
Survivors	0.1	4.0	2.9	1.5	2.3
주택	2.4	1.2	0.6	0.7	2.6
기타 사회보장급여	4.0	2.4	2.6	2.7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노령자, 장애자, 질병과 관련된 서비스는 corrected되지 않았음.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표 V-11> 유형별, 목적별 사회보장지출(1997년)

(단위 : 백만 KR/FIM)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i>가족과 자녀</i>	41,669	22,808	11,841	37,401	67,096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6,490	2,874	1,284	6,097	13,302
기타 현금급여	11,177	11,000	5,360	16,960	17,479
서비스	24,002	8,934	5,197	14,344	36,315
<i>실업</i>	41,636	24,143	3,053	11,829	56,603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39,179	21,912	2,911	7,443	52,733
기타 현금급여	50	199	-	-	-
서비스	2,407	2,032	142	4,386	3,870
<i>질병</i>	62,358	39,695	35,801	79,621	135,002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11,179	7,493	7,173	26,543	23,834
기타 현금급여	422	-	-	67	33
서비스	50,757	32,202	28,628	53,011	111,135
<i>노령자</i>	126,204	54,081	26,683	83,910	224,720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105,596	47,936	19,473	60,478	174,401
기타 현금급여	-	835	-	-	105
서비스	20,608	5,310	7,209	23,432	50,214
<i>장애자</i>	36,736	26,554	11,285	46,946	70,546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21,079	20,484	7,837	24,764	42,926
기타 현금급여	4,317	1,164	-	9,174	3,448
서비스	11,341	4,906	3,448	13,008	24,172
<i>Survivors</i>	188	7,182	2,774	3,972	14,005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1	6,926	2,774	3,762	14,005
기타 현금급여	-	225	-	12	-
서비스	187	30	-	198	-
<i>주택</i>	8,086	2,169	534	1,824	15,903
서비스	8,086	2,169	534	1,824	15,903
<i>기타 사회보장급여</i>	13,250	4,443	2,420	7,399	19,095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6,841	3,213	1,085	3,948	12,673
기타 현금급여	4,806	-	186	187	-
서비스	1,603	1,230	1,150	3,264	6,422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계	190,365	110,838	42,537	133,035	333,874
기타 현금급여 계	20,772	13,423	5,546	26,400	21,065
서비스 계	118,991	56,813	46,308	114,001	248,031
사회보장지출 계	330,127	181,075	94,390	271,613	602,970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표 V-12> 유형별, 목적별 사회보장지출비중(1997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i>가족과 자녀</i>	100	100	100	100	100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16	13	11	16	20
기타 현금급여	27	48	45	45	26
서비스	57	39	44	39	54
<i>실업</i>	100	100	100	100	100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94	91	95	63	93
기타 현금급여	-	1	-	-	-
서비스	6	8	5	37	7
<i>질병</i>	100	100	100	100	100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18	19	20	33	18
기타 현금급여	1	0	-	0	0
서비스	81	81	80	67	82
<i>노령자</i>	100	100	100	100	100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84	89	73	72	78
기타 현금급여	-	2	-	-	0
서비스	16	10	27	28	22
<i>장애자</i>	100	100	100	100	100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57	77	69	59	61
기타 현금급여	12	4	-	20	5
서비스	31	18	31	21	34
<i>Survivors</i>	100	100	100	100	100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1	96	100	95	100
기타 현금급여	-	3	-	0	-
서비스	99	0	-	5	-
<i>주택</i>	100	100	100	100	100
서비스	100	100	100	100	100
<i>기타 사회보장급여</i>	100	100	100	100	100
소득에 포함되는 현금급여	52	72	45	53	66
기타 현금급여	36	0	8	3	-
서비스	12	28	47	44	34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계	58	61	45	49	55
기타 현금급여 계	6	7	6	10	4
서비스 계	36	31	49	41	41
사회보장지출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VI. 결론 및 시사점

북구 국가들에 있어서 가족 및 자녀에게 제공되는 지원정책의 폭은 광범위하다. 남성에게는 노동과 연관된 사회급여가 여성에게는 가족 및 자녀와 관련된 지원의 비중이 크게 주어진다. 또한 가족의 구성유형에 따라 특정 사회급여의 중요성이 달리 부각되고 있다. 독신 가정과 기혼부부 가정 및 연령 등에 따라 각 사회급여 및 수당의 수혜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독신 가정에는 사회부조와 학생 보조금, 임대보조금 및 실업수당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부부가정의 경우에는 가족수당 및 근로소득과 연관된 사회급여가 중요하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북구 각국이 다른 유럽국들보다 신축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부간의 육아휴직기간이 이전되며, 다단계의 휴직기간과 임금대체율 및 급여율이 마련되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고 휴직 후 복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수당의 경우 다수의 자녀, 1인 생계부양자인 편부모의 경우와 특정지역 거주자는 보다 관대한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별거 및 이혼 가정의 경우 자녀의 생계유지를 위한 양육비의 선지급 제도인 생활유지수당은 자녀보호 차원에서 특징이 될 만한 항목이다.

북구 국가에서 임금과 관련된 급여의 경우는 대부분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거나 자녀수당 및 사회부조의 성격이 강한 급여에는 과세가 면제된다. 가장 비중이 큰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은 비과세되고 있으나 재정상의 부담으로 인해 최근 현금급여 중 과세 대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북구 국가들에 있어 과세는 소득재분

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북구 국가들의 여성과 관련된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의 고찰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경제발전의 도약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인적자원의 활용 및 개발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활용 상태의 우수한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지식기반전환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으며 출산율의 감소(1970년도의 4.5%에서 1998년에는 1.5%)와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향후 노동인력의 구조의 변화는 효율적인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노동기구(ILO)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OECD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가임 및 어린 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25~39세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임 및 육아를 담당하는 25~39세 연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출산 및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북구와 같이 70%를 상회하는 여성들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과 약 2% 가량의 높은 출산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여성과 관련된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유급 산전후휴가 기간동안의 급여에 대한 제정 및 조세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여성근로자 고용기피 또는 차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급 산전후휴가제도의 기간연장을 ILO 기준에 맞게 최저 12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다음 단계에서 ILO가 권장하는 14주로 연장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ILO는 조약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휴가급여를 공공기금이나 보험제도에 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출산 및 육아관련 비용을 사업주 개인 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북구 각국에서는 산모의 유급 산전후 휴가가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당연시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출산과 관련하여 최고 64주까지 유급휴가가 가능하며 노르웨이의 경우는 산전급여의 100% 또는 80%의 소득대체에 따라 42주 혹은 52주의 유급휴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는 28주, 핀란드의 경우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44 주의 유급출산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북구의 국가들의 경우 육아휴직제도가 널리 정착되어 있으며 양쪽부모 모두 유급휴직 및 기간의 이전이 가능하고 휴직 후 복직하 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다 신축적인 육 아휴직제도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이용을 통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육아 및 간호휴직제의 정착과 수준이 높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재정지원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 이다.

특히 여성인력의 고활용을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노동시 장을 떠나는 사례를 최소화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도 살펴본 북구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 는 출산 및 육아관련 재정 및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 라 실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북구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는 자녀를 하나의 개인 으로서 인정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소한의 경제 적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반영한 제도이다. 이러한 아동 또는 자녀수

당제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소한의 소득지원을 정부차원에서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양육부담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 또는 방임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미래의 노동력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북구 각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부모 특히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안심하고 직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경우 방과 후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정착됨으로써 어린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에게 직장생활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방과 후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도입 및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의 국가들 중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는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대주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소득공제의 폭이 협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자녀양육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 등의 세제혜택을 고려해 봄으로써 이러한 제도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선진국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남녀평등의식을 위한 투쟁을 벌여왔으며 이에 따라 오래 전부터 정부차원에서의 여성고용을 보호하는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졌다. 특히 북구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물론 공공부문과 정부의 상위직에 여성고용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민간부문에서의 여성고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남녀평등의식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

울이는 동시에 여성을 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고용을 장려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자료

- 김애실, 「국가경쟁력과 여성인력의 상관분석」, 한국여성경제학회 제3회 정기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0. 11.
- 금재호,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경제학회 제3회 정기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0. 11.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99.
- EUROSTAT,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1999.
- ILO,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8.

<덴마크>

- Lisbeth B. Knudsen, “Recent Fertility Trends in Denmark
A Discussion of the Impact of Family Policy in a
Period with Increasing Fertility,” Danish Center for
Demographic Research, Research Report 11, 1999.
- Ministry of Social Affairs, “Child and Family Policies,”
Social Policy in Denmark, February 1995.
- _____, “From Passive to Active: Sickness Benefit, Cash
Assistance, Activation and Rehabilitation,” *Social
Policy in Denmark*, February 1995.
- _____, “Social Pensions,” *Social Policy in Denmark*,
February 1995. *Social Protection in the Nordic
Countries 1997*,” *Scope, Expenditure and Financing*,
Nordic Social-Statistical Committee 1999.

<노르웨이>

Anne Lise Ellingsæter, “Norwegian Employment Policies and Gender Equality 1998,” Inst. for Social Research, Norway, May 1998.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Guide to Gender Impact Assessment of Government Policy,” Gender Mainstreaming in Norway, May 2000.

_____,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Norway’s Fifth Periodic Report(1994-97),” February 2000.

_____, “The Rights of Parents of Small Children in Norway,” 1998.

_____, “The aim of the Cash Benefit Scheme is to Give Families More Time to Care for Their Own Children,” 2000.

_____, “Cash Benefit for Parents with Small Children: Cash Benefit Act,” Act of 26th, No.41, June 1998.

Ministry of Finance, “The Long-Term Programme 1998-2001, Report No.4 to the Storting (1996-1997),” Unofficial Translation From Norwegian, 1997.

_____, “The National Budget 2000: The Norwegian Economy,” October 1999.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Equitable Redistribution White Paper,”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in Norway, Summary of White Paper No.50(1998-90), October 1999.

_____, “National Insurance Act and Amendments,” April 11,

- 1991.
- _____, “Welfare Towards 2030: The Welfare White Paper,” Summary Version of White Paper No.35(1994-95).
- _____, Health Services in Norway, “Benefits in Kind in the case of Sickness and Maternity,” January 1999.
- _____, The Norwegian Social Insurance Scheme: Survey,” January 2000.
- _____, “Women’s Health in Norway, Executive Summary of NOU 1999,” 1999.
- Social Insurance, “National Insurance SchemeFolketrygden,” 1999.
- Svein Longva, “Women and Men in Norway 1998,” Statistics Norway,” July, 1998.

<스웨덴>

- Anita Nyberg, *Women, men and Incomes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Independence*, Government Official Reports 1997, Ministry of Labor, 1998.
- Ingrid Hagman, “Mot halva Makten,” *Elva Historiska Essäer om Kvinnors Strategier Och Mäns Motstånd*,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1997. The Federation of Social Insurance Offices, “Social Insurance Guide 1999,” Sweden, 1999.
- Jämställdhetsombudsmannen, “What is the Office of the Equal Opportunities Ombudsman?,” Sweden, 1999.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Background

Report Prepared for the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December 1999.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hared Power Responsibility*, National Report by the Government of Sweden for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1995, Sweden, 1994.

_____, "National Machiner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June 1999.

_____, *Shared Power—Women and Men in Decision—Making*," April 1999.

_____, "Men and Equality," June 1999.

_____, "Old age Pensions in Sweden," No.4, July 2000.

_____, "Swedish Family Policy," No.2, January 2000.

Ministry of Industry, "Act on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The Equal Opportunities Act," July 1999.

_____, "Gender Mainstreaming in Sweden,"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in all Policy areas," 1999.

_____, "Swedish Government Policy on Gender Equality: Into the 21st Century," Article No. N 2000.009, 2000.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1999," July 1999.

_____, "Social Insurance Expenditure in Sweden 1997–2000, Who Gets the Money and How is the Insurance Financed?" 2000.

Skattemyndigheten, "The Swedish Tax System: Income From Wages and Capital Income Year 2000," Sweden, 2000.

- Swedish Tax Administration, "Swedish Tax Administration and The Swedish Tax System," 1999.
-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Office, "Social Insurance," Sweden, June 1, 1999.
- The Swedish Institute, "Face Sheets on Swede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classification FS 82m ohj, September 1997.
- _____, "Fact Sheets on Sweden: Childcare in Sweden," October 1999.
- The Swedish Institute, "Fact Sheets on Sweden: The Health Care System in Sweden," May 1999.
- _____, "Fact Sheets on Sweden: Compulsory Schooling in Sweden," October 1998.
- _____, "Fact Sheets on Sweden: Old Age Pension in Sweden," July 1999.
- _____, *Sweden-The Equal Way*, Sweden, 1999.

<핀란드>

- "Gender Equality and Employment Policy, Discussion Paper of the Presidency," Ministerial Conference 29 September - 1 October 1999, Helsinki.
- "Gender Equality and Employment Policy, Background Document," Ministerial Conference 29 September - 1 October 1999, Helsinki.
- "Gender Equality and Employment Policy," Background Document, Ministerial Conference 29 September - 1 October 1999, Helsinki.

- Klaavo, Salmen, Tenkula and Vanne, "Pension Expenditures, Funds and Contributions to the Year 2050," The Central Pension Security Inst., 1999.
- Ministry of Labor, "Family Leaves- a matter for both parents," 1999.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Unemployment, Social Protection and Families with Children*, 1997.
- _____, "Purpose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1998.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Gender Equality in Work and Everyday Life," Council for Equality, March 1999.
- _____, *Health in Finland*, National Public Health Institute, Helsinki, 1999.
- _____: Finance and Planning Department, *Social Protection in Finland 1997*, 1999.
- _____, *International Evalua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Welfare and Health*, 1999.
- _____, "Social Welfare in Finland," 1999.
- _____,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and related authorities," 1999.
- _____,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Equality Issues in Finland," 1998.
- _____: Office of The Ombudsman for Equality, "A Millennium of Gender Equality," Equality Brochures 1999.
- _____, *Trends in Social Protection in Finland 1999-2000*, 2000.

- Nordic Council of Ministers, "Women and Men in the Nordic Countries 1999, Facts and Figures," TemaNord Gender Equality, 1999.
- Pirkko Valppu, "A Brief Overview of Working Conditions in the Care Sector," Government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VATT-Working Notes 50, Helsinki, 2000.
- "Public Finances in The Twenth-First Century: Limitations, Challenges and Direction of Reforms," Working Group Report, Prime Minister's Office Publication Series, 1999.
- Statistics Finland, "Facts and Figures About Women and Men in Finland 2000," 2000.
- _____, "Women and Men in Finland 1999," Gender Statistics 7, 1999.
- _____, and the Council for Equality, "The Gender Barometer 1998,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n Finland," Helsinki, 1999.
- The Central Pension Security Institute, "The Finnish Statutory Earnings-Related Pension Scheme for the Private Sector," Edited by Tarja Tuomisto, 1999.
- _____, "The Self-Employed Person's," Pension, 2000.
- The Council For Equality, "A Pioneer of Equality, 1972-1997," Finland, November 1997.
-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Statistical Yearbook of Pensioners in Finland*, 1998.
- Tuomisto, "The Finnish Statutory Earnings-related Pension Scheme," The Central Pension Security Institute.
- Women in Finland*, Otava Book Printing Co. Ltd, Finland, 1999.

<국문요약>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도숙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수한 인력자원의 활용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인력자원 활용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활용 상태의 우수한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수준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학력, 즉 대학졸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중등교육 이하의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향후 노동인력의 구조변화는 효율적인 여성인력활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가임 및 육아를 담당하는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조한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결혼과 출산 및 육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고 더불어 출산율도 세계 최고의 수준인 북구 국가들의 여성관련 가족 및

자녀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북구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성 및 관련 지원제도는 남자의 경우와 달리 가족 및 자녀와 관련된 지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매우 신속적이고 광범위한 출산전후 유급휴가제도와 유급육아휴가제도를 들 수 있다. 유급출산휴가의 정착은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보육기관의 이용을 통해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최소화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북구 국가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정착을 통해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하여금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자녀수당, 자녀의 선지급 생활유지비 등 자녀 성장과정에서의 기초적인 경제적 환경마련을 위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북구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을 위한 각종 재정 및 조세지원제도의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의 제1단계를 정리하고, 제2단계에서는 이러한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원제도를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Abstract>

The Government Policies for Working Women with Family and Children in the Nordic Countries

Do-Sook Han

Korea has achieved its economic miracles in spite of the lack of natural resources by utilizing its human resources effectively. However, for the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Korea needs to adopt a new approach towar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limited labor resources. Korea has a large pool of readily available unutilized excellent women labor force. Thus from this perspective, Korea's future prosperity is largely dependent on the effective use of women labor force.

Korea's education level for women has rapidly increased over time. However, the proportion of most highly educated women in the labor market is far less than that of less educated women. A dramatic fall in the birth rate and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will likely to lead the rapid aging of labor force. These demographic changes will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adily available women labor participation more than ever.

According to ILO report, the Korean women's labor

participation is lower than the most of the OECD countries for all ages. And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the women of ages of child bearing and rearing. The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the primary timing and reasons for Korean women leaving the labor market are marriage, child bearing and rearing.

This study provides a basic materials for the directions for the government policies for increasing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This study is comprised of two stages. As a first stage,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for the government policies of working women with family and children in the Nordic Countries. The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s in the Nordic countries far exceed 70% with the birth rates approaching almost 2% in recent years. By identifying and comparing different government policies for working women with family and children in the Nordic countries will give us insightful suggestions for the possible directions of government policies for the working women in Korea.

The main government policies of working women with family and children in the Nordic countries include various forms of financial support. These policies include very generous financial benefits in the event of child birth and adoption, cash benefits during the leave of absence for child minding, child allowances, advance on maintenance allowance for children, tax benefits and child pension and etc. They also provide numerous services to the family and children of working women. These services include day

care institutions for pre-school children, public and private day care, pre-school classes and after-school programs.

As a final stage of the study in the following year, we plan to closely analyze the Korean labor market for women and apply economic reasoning for possibl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women's labor participation in Korea.